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 대상에 집합투자증권 등 유가증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및 고규소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등을 추가하고, 건물·구축물 및 비품 등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안전시설의 범위에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3.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9조의8제2항”을 “제99조의8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에”를 “시설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에”로, “사용시간”을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11(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2. 모든 주요 제작 분야(시나리오, 콘티, 그림, 편집)에 대하여 제작 인력 본인이거나 제작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3.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② 영 제22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10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12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2.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④ 영 제22조의12제5항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가. 첫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나. 첫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의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

2. 웹툰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 전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를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 18항”으로 한다.

① 영 제60조제1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장”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제25조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남후농공단지

19.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제42조의2 본문 중 “영 제92조의13제2항”을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

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나목·라목의 서류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

제46조의2제2항제1호나목1) 중 “제56호까지 및 제60호”를 “제56호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

제46조의4를 제46조의5로 하고,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영 제104조의16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제47조의2제2항제4호 중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 또는 제3호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완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B: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제47조의2제5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으로, “확인한”을 “발급한”으로 한다.

3.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또는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

의 생산량 축소완료 확인서 사본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9까지를 각각 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10까지로 하고,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 제5항 단서에 따른 자본총액 및 부채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자본총액 및 부채액으로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산기준 재무제표상 자본총액 및 부채액으로 한다.

제47조의9(중전의 제47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제48조제4항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어민확인서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

인서(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50조의7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매매거래일”을 “매매가 이루어진 날”로, “율로”를 “율의 평균으로”로 하며,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거래소 결제회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의 거래참가자일 것

거래량(당일 한국거래소 정규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 회전율 = 거래량을 합산) ----- 상장주식 수

제50조의7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를 “의한 시장조성계약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에 의한 매매거래 조성계약”으로, ““주식시장조성자”라 한다)가 시장조성계약”을 ““주식시장등조성계약”라 한다)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시장등조성자”라 한다)가 주식시장등조성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시장조성자”를 “주식시장등조성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장조성계약”을 각각 “주식시장등조성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14항 중 “주식시장조성

자”를 각각 “주식시장등조성자”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2조의11제5항”을 “영 제22조의11제5항, 영 제22조의1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5, 제7호의17, 제7호의18, 제9호의14 및 제9호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의4 중 “영 제25조의3제10항 및 영 제25조의4제4항”을 “영 제25조의3제10항, 영 제25조의4제4항 및 영 제25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8 중 “별지 제10호의9서식”을 “별지 제10호의9서식(1), 별지 제10호의9서식(2)”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의2 중 “영 제104조의16제6항”을 “영 제104조의16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영 제97조의9제2항”을 “영 제97조의10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5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93조의8제7항”을 “영 제93조의8제7항, 영 제93조의11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1호의17 중 “영 제92조의13제3항”을 “영 제82조의5제5항, 영 제83조의3제4항, 영 제92조의1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1호의2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3호의6 및 제64호의33부터 제64호의3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5호의1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21 중 “영 제104조의27제3항”을 “영 제104조의27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2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5호의23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5.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5서식

7의17. 영 제18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비과세신청서

-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별지 제6호의17서식(1) 및 별지 제6호의17서식(2)
- 7의18. 영 제18조제12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6호의18서식
- 9의14. 영 제21조제17항에 따른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3서식
- 9의15. 영 제22조의12제5항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14서식
- 25의7. 영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23호의6서식
- 61의6. 영 제82조의5제3항, 영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30서식
- 61의24. 영 제93조의6제2항제1호, 영 제93조의7제3항제1호,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 및 영 제93조의11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4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 별지 제60호의28서식 및 제60호의29서식
- 63의6. 영 제97조의9제8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및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62호의6서식 및 제62호의7서식
- 64의33. 영 제99조의14제3항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별지 제63호의33서식
- 64의34. 법 제99조의15제4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 별지 제63호의34서식

식(1) 및 별지 제63호의34서식(2)

64의35. 법 제99조의15제5항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결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63호의35서식

65의14. 영 제104조의16제11항에 따른 취득완료보고서: 별지 제64호의

15서식(1), 별지 제64호의15서식(2)

65의23. 영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분리과세신청서: 별지 제64호의2

4서식

별표 4, 별표 6,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3),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6호의17서식(1), 별지 제6호의17서식(2) 및 별지 제6호의1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의9서식 및 별지 제8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1서식 나목 공제세액 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작성방법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제세액 계산				
출자일	㉔ 출자금액	㉑ 세액공제 대상 제작비용 (= ㉑)	㉒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총 비용	㉓ 공제세액 [= ㉔ × (㉑ ÷ ㉒) × 3%]
년 월 일				

7. "㉒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총 비용"란: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총 비용(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조달한 비용과 그 밖의 투자를 통해 조달한 비용을 모두 포함)을 적습니다.

별지 제8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3서식 및 별지 제8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5서식 중 “제25조제9항·제25조의2제9항·제25조의3제10항·제25조의4제4항”을 “제25조제9항·제25조의2제9항·제25조의3제10항·제25조의4제4항·제25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10호의9서식(1)로 한다.

별지 제10호의9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만,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 하는 대학법인의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건축물 또는 유가증권을 적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제97조의9제2항”을 “제97조의10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7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의29서식, 별지 제60호의30서식, 별지 제62호의6서식 및 제6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2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33서식, 별지 제63호의34서식(1), 별지 제63호의34서식(2) 및 별지 제63호의3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64호의15서식(1)로 한다.

별지 제64호의15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2서식 앞쪽 ③ 공제세액 계산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제5항”으로 한다.

㉓ 공제세액 계산내용			
	공제대상금액(㉑)	공제율(㉒)	공제금액(㉑ × ㉒)
공제금액	㉑ 해당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	5/1,000	원
	㉒ 해당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	1/100	원
	㉓ 공제금액의 합계		원
	㉔ 산 출 세 액		원
	㉕ 한 도 액(㉑×10/100)		원
	㉖ 공 제 세 액(㉓과 ㉕ 중 적은 금액)		원

별지 제64호의2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의2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1) 뒤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지분가액조정명세서 4.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5. 그 밖의 동업자군별 부속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의 서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기부금명세서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p style="margin-left: 40px;">※ "가"목 및 "나"목은 배분대상 소득금액 등 관련 서류이며 "다"목은 소득금액 배분액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서류임</p> 6.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7.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8.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	--

별지 제1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 이후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3. 00.>

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산업재해 예방시설	<p>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와 같은 법 제63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안전조치·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p> <p>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p> <p>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p> <p>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p> <p>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p> <p>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p> <p>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설비</p> <p>아. 스마트 안전관제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및 해당 설비의 통합운영 시스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능형 영상기록장치 2) 지능형 안전 경보장치 3) 통합관제 및 사고방지를 위한 디스플레이 설비 4)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p>자. 산업재해예방에 이용되는 로봇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드론 2) 무인운반 협동로봇 <p>차. 공장 내 비상대피를 위한 슬라이딩도어 및 비접촉식 개폐장치</p> <p>카.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호안(보수, 보강 및 증설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타. 추락방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족장 및 트러스 등 구조물</p>
2. 화재예방·소방시설	<p>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p>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방자동차(「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제외한다)
3. 광산안전 시설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장비
4. 내진보강 시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기존 건물의 골조에 앵커 등 연결재로 접합·일체화하여 기존부와 보강부를 영구히 접합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비상대비 시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3. 00.>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

영 별표 7의 기술		사업화 시설	
구분	분야		
1. 미래형 자동차	가. 삭제 <2023. 6. 7.>		
	나. 전기구동차	1) 삭제 <2023. 6. 7.>	
		2) 삭제 <2023. 6. 7.>	
		3)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시스템 및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을 제작하는 시설
	4) 초고효율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HEV)의 연비 향상, 배출가스 감축 등을 위해 엔진 열효율(공급된 연료에너지에 대해 출력되는 유효일의 비를 말한다)을 45%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구동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시설	
2. 지능정보	가.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시설
	나. 착용형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을 제작하는 시설
		2)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μ m 후막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음극 소재 및 해당 전극을 제조하는 시설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 · cm ² /cm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 · 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시설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을 제조하는 시설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2)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 · 처방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및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 · 진단 · 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아. 양자 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자.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온도, 습도, 충격 등의 상태 데이터를 정보수집 장치를 통해 수집 및 저장하고, 이를 국제표준 ISO 27017에 따라 보안성이 검증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여 단위 화물 정보와 연동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상에서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5. 차세대 전자정	가. 지능형 반도체	1) SoC 파운드리 제조, 후 공정 및 장비	SoC(System on Chip) 반도체 파운드리(Foundry)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및 파운드리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 시설

보 디
바이
스

· 센
서

제작 기술	
2)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과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 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3)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기술	물리적·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판단·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센서(sensor)·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 μ m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초소형 고성능 센서를 제조하는 시설
4)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EC-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를 제조하는 시설
5) 에너지효율 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실리콘 기반의 MOSFET(MOS Field-Effect Transistor)에 비해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인버터 등에 탑재되는 SJ(Super Junction) MOSFET,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SiC(Silicon Carbide) MOSFET을 제조하는 시설
6) 에너지효율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

	<p>향상 전력 반도체 BCDMOS 설계·제조 기술</p>	<p>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초절전 전력반도체 0.13μm 이하 BCDMOS(Bipolar /Complementary/Double-diffused metal-oxide-semiconductor)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시설</p>
	<p>7)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 기술</p>	<p>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해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시설</p>
<p>나. 반도체 등 소재·부품</p>	<p>1) 포토레지스트 개발 및 제조 기술</p>	<p>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 및 관련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p>
	<p>2) 원자층증착법(ALD) 및 화학증착법(CVD)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p>	<p>기존의 이산화규소(SiO₂)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박막제조를 위해 증착공정[ALD(Atomic Layer Deposition), CVD(Cheical Vapor Deposition)]에 사용되는 전구체(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를 제조하는 시설</p>
	<p>3)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 기술</p>	<p>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p>
	<p>4)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개발 및 제조 기술</p>	<p>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icle), 합성 퀴츠, 스테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제조하는 시설</p>
	<p>5) 반도체용</p>	<p>14nm 이하급 D램(DRAM)과 170단 이상 낸드플</p>

	기관 개발 및 제조기술	래시 메모리 및 에피텍셀 반도체용 기관을 제조하는 시설
	6) 첨단 메모리 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 기술	14nm 이하급 D램(DRAM)과 170단 이상 낸드 플래시 메모리 양산을 위한 장비·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7)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질화규소(SiNx), 산화규소(SiOx) 막질의 선택적 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시설
	8)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Quartz Crucible) 제조 시설
	9)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cm ²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 μ m 이하) 형성 재료를 제조하는 시설
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1)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저온폴리실리콘(LTPS) 또는 산화물(Oxide) TFT(전자이동도 8cm ² /Vs 이상) 기관 상에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고화질(고해상도, 고색재현, 고균일, HRD)을 구현한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소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부품·소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4) 차세대 차량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30℃

		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및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한 100 μ m 이하의 자발광 R/G/B 마이크로 LED 칩과 이를 이용한 픽셀·패널 및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6)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1,500ppi 이상)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7) 친환경 QD (Quantum Dot)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적은 소비전력으로 고색재현 및 화학적·열적 안정성 개선이 가능한 QD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을 적용한 시설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라.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 개발 및 장비 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마.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상·텍스트·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6. 차세대 방	가. 5세대(5G)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

송통신	G: 5g eneration) 및 6세대 (6G: 6gener ation) 이동 통신	비 기술	비를 제조하는 시설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트래픽(traffic) 전송·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등]의 부품·소자를 제조하는 시설
나. UHD (Ultra-High Definition)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를 제조하는 시설	
7. 바이오·헬스	가. 바이오·화합물의약	1) 삭제 <2023. 8. 29.>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
		3) 삭제 <2023. 8. 29.>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 기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과 혁신형 신약의 원료를 개발·제조하는 시설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과 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를 개발·제조하는 시설
		6) 삭제 <2023. 8. 29.>	
		7) 삭제 <2023. 8. 29.>	
		8) 동물용의약	식물체·식물세포 기반의 동물용의약품 후보물

	<p>품 후보물질 생산기술</p>	<p>질 탐색, 디자인, 식물배양, 정제 및 대량생산 등을 통해 백신, 치료제, 진단제 등의 후보물질을 개발·제조하기 위한 시설</p>
나. 의료 기기 · 헬스케어	<p>1)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 기술</p>	<p>조기 정밀 진단을 위한 영상기술 간 융합(X-ray - 초음파, 광음향 - 초음파) 및 정밀치료를 위한 초음파 영상유도 기반의 체외충격파 치료 기술 기반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기를 제조하는 시설</p>
	<p>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p>	<p>우수한 유연성과 고강도의 기계적 물성을 가지며, 시술에 따른 혈전증 및 재협착률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스텐트를 제조하는 시설</p>
	<p>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p>	<p>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p>
	<p>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p>	<p>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p>
	<p>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p>	<p>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p>
	<p>6) 신체기능 복원·보조 의료기기 기술</p>	<p>생체역학·바이오닉스 등 첨단 의공학 기술을 통해 영구 손상된 신체기능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p>
다. 바이오농수산	<p>1) 비가열 및 고온·고압 가공처리 기</p>	<p>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 전기저항 가열, 방사선 조사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가압·진공·과열증기 및 증기직접주입</p>

	술	법 등을 이용한 고온·고압 처리기술을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 또는 사멸시키는 가공처리 시설
	2)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제조 기술	동·식물 및 미생물 유래 기능성 물질을 가공 또는 대량 생산하는 시설
	3) 신제품 종자 개발기술 및 종자 가공처리 기술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를 가공 처리하는 시설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최적활성 연구,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6) 단백질 분리·분획·정제 및 구조화 기술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농·식품자원에서부터 단백질을 전분, 지방 등과 분리하여 용도에 맞게 분획·정제하는 시설, 동물세포나 조직을 배양·분화하는 시설 및 단백질 또는 세포를 3D 프린터, 압출식 성형방식, 지지체 등을 통해 구조화하고 원료·소재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
	7)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	수분전이제어, 원물코팅, 라디오 주파수·저온스팀(Steam) 해동 등을 활용하여 냉동원료 및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식품 냉·해동 안정화 시설
라. 바이오 화학	1)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기술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당 또는 리그닌을 추출·정제하는 시설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시설
	2) 바이오 화장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

		<p>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p> <p>3) 신규 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화학 소재 개발 및 미생물 발굴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p>	<p>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제조하는 시설</p> <p>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장품 소재, 바이오생리 활성 소재 등을 생산하는 미생물 확보를 위한 유전자 편집 등의 합성생물학 기술과 이를 활용한 디자인, 제작, 시험, 학습 등의 순환 과정을 수행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시설</p>
8. 에너지·환경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Energy Storage System)	<p>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p>	<p>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멤브레인(Membrane)· 전해질· 저가 분리판· 스택(Stack)을 제조하는 시설 및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소재(양극·음극· 전해질)· 셀(Cell)· 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p>
		<p>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p>	<p>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를 제조하는 시설</p>
		<p>3) 배터리 재사용·재제조를 위한 선별 기술</p>	<p>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로 수명이 종료된 전기동력 자동차 배터리를 검사·분해·평가하는 시설</p>
		<p>4)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p>	<p>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cell) 및 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p>
		<p>5) 전기동력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기술</p>	<p>전기동력 자동차(xEV)의 주행거리 연장, 충전시간 단축 등을 위해 에너지 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한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시설</p>
나. 발전	<p>1) 대형가스터</p>	<p>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p>	

시스템	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 · 제작 · 조립 · 시험 평가기술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380MW 이상, 효율 43% 이상의 터빈 및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2)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 구동 시스템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 ₂)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 · 압축기 · 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다. 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해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제조하는 시설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 · 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340℃ · 150기압의 1차 냉각수 및 300℃ · 50기압의 2차 냉각수 노출 가능), 원자로 내부 구조물(중성자 조사 및 340℃ · 150기압의 1차 냉각수 노출 가능) 등을 생산하는 시설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검사 장비,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 투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4) SMR(Small Modular Reactor) 제조 기술	탄력운전 대응 열적성능강화 핵연료집합체, 혁신형 제어봉집합체, 무봉산 노심설계가 가능한 일체형 가연성 흡수봉 제조 시설, 증기발생기 전열관 제조 시설 및 원자로 · 증기발생기 · 가압기 등 주요 기기가 일체화된 원자로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5) 친환경 · 저탄소 후행 핵주기 기술	원전 해체, 해체 원전 계통 · 기기 · 구조물 채움, 금속 · 콘크리트구조물 절단, 해체 폐기물 처리 · 감용, 방폐물 인수 · 처리 및 방폐물 운반 · 저장에 필요한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6) 대형 원자력 발전소 제조 기술	원자로 · 내부구조물, 핵연료 취급 · 검사장비, 증기발생기 · 가압기, 원자로 냉각재펌프, 증기터빈 · 주발전기 및 보조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7) 혁신 제조공 법 원전 분야 적용 기술	분말-열간등방압성형(PM-HIP) 기술, 전자빔 용 접(EBW) 기술, 다이오드 레이저 클래딩(DLC) 기술 또는 원전기자재 적층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 기자재를 제조하는 시설
라. 오염 방지· 자원순 환	1) 미세먼지 제 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 온실가스 동 시 측정 기 술	미세먼지 및 원인가스를 동시에 제거하고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세라믹필터 및 촉매 시설, 기 액접촉층 및 습식 플라즈마(wet plasma)를 통한 무필터 정화 시설, 0.3 μ m 이하 고정밀 미세먼지를 수분과 구별하여 측정하는 시설 및 공정내부 미 세먼지 온실가스 농도 동시 실시간 측정 시설
	2) 차세대 배기 가스 규제 대 응을 위한 운 송·저장시 스템 기술	운송·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 스 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 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 lytic Reduction)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 템·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3)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들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 0 $^{\circ}$ C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 는 저감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4)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 용 기술	폐플라스틱의 분리·선별, 세척, 파쇄·용융·배 합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 및 플 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시설
	5) 폐플라스틱 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 한 산업원료 화 기술	폐플라스틱·페타이어·폐섬유의 해중합, 열분해 또는 가스화 공정을 거쳐 화학원료·고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제품 등을 제조하는 시설
	6) 생분해성 플 라스틱 생산 기술	바이오화학 및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여 생분해 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컴파운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분해성수지제 품 및 해당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 다]를 제조하고 물성을 증대하는 시설
	7) 폐기물 저감 형 포장소재	복합소재의 단일화, 오염 저감 표면처리, 수(水) 분리성 강화 등 포장재의 재활용도를 개선하는

		생산 기술	포장재 생산 시설 및 소재 경량화, 석유계 용제 저감 등 포장재와 관련된 플라스틱·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는 포장재 생산 시설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 장비 및 검사 장비 설계·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 [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 또는 고탄성·고강도·고내열성(250℃ 이상)·고내한성(-153℃~-273℃) 아라미드(Aramid)·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 Ultra-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액정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3) 섬유기반 전자소재·부품 및 제품 제조기술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소재·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4) 의료용 섬유 제조기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혈액 등과 접촉 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의료용 섬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바이러스·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를 제조하는 시설
		5) 친환경섬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로서 생분해

	제조 기술	성 섬유고분자,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또는 바이오매스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6) PTFE (PolyTetraFluoro Ethylene) 멤브레인 기반 고성능 복합필터 제조기술	공기중의 0.3um 크기의 입자 99.97% 이상을 균일하게 포집할 수 있는 PTFE 멤브레인 기반의 고성능 복합필터 핵심 소재·부품을 제조·가공하는 시설
	7) 특수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전자부품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24~27 mN/m, 0.1% solution/PGMEA), 극미량의 금속함유량(100ppb 이하)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및 도료 및 포소화제의 기능향상을 위한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15~18 mN/m, 0.1% 수용액), 극미량의 PFOA(Perfluorooctanoic Acid) 함유량(1ppm 미만)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제조 시설
	8)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 기술	유해물질을 여과·분리·차단하는 1 μ m이하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급 이상의 고성능 정밀여과 복합필터를 제조하는 시설
나. 초경량고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해 저온(150 $^{\circ}$ C 이하)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해 방열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다. 하이퍼플라스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	고강성 하이퍼플라스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 2 이상), 내화학성(온도 23 $^{\circ}$ C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담근 후 인장강도

틱	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 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 mm ³ /Kgf·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라. 구리 합금	1) 고강도 구리 합금 설계·제조기술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Cu-Ni-Sn계)을 제조·가공하는 시설
	2)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기술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의 고성능·소형화에 적용 가능한 두께 0.1mm 이하의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을 제조·가공하는 시설
마. 특수 강	1) 고청정 스테인레스계 무계목강관·봉강 제조기술	망간 함유량 0.8% 이하 및 황 함유량 0.005% 이하로 제어된 고청정 스테인리스계 합금을 활용하여 용접이음매를 갖지 않는 강관 및 봉 형태의 철강재를 제조·가공하는 시설
	2)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고강도(420Mpa급 이상), 고인성(-40℃ 이하에서 충격값 50 Joule 이상)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H형강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시설
	3) 장수명 프리미엄급 금형소재 제조기술	기존 교체주기 5만회의 금형대비 30% 이상 수명이 향상된 합금설계, 고청정 특수강을 제조·가공하는 시설
바.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1)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내열성(온도 175℃에서 22시간 동안 영구압축줄임율 30% 이내), 내화학적성(150℃, 240시간 내유체적변화율 10% 이하) 및 저온성(-66℃ 이하에서 기밀력 1800psi 이상)의 특성을 지닌 불소계 실리콘 고무 합성 및 분자량 제어 관련 제조시설
	2) 고기능 불소계 고무 제조·가공 기술	2원계 이상의 공중합체로서 불소함량이 50% 이상이며 내한성(어는점 -15℃ 이하), 내열성(200℃ 이상) 및 내화학적성(온도 25℃ Fuel-C에서 체적변화율 4% 이내)을 갖춘 불소계 고무 제조·가공시설
	3) 고기능 부타	고상 및 액상 기능성(Cis content 90% 이상, 무니

	디엔 고무 제조·가공 기술	점도(ML1+4, 100℃) 40 이상) 부타디엔류 고무 제조 기술과 고내마모성(내마모도 60mm ³ 이하, 구름저항 5.5 이하) 부타디엔 고무 제조·가공 시설
	4) 고기능 비극성계 접착소재 제조기술	Haze 1% 이하의 광학특성과 연속사용온도 100℃의 열안정성을 갖는 실리콘계 접착·접착소재 및 300℃ 이상의 고온가공성형이 가능한 아크릴레이트 함량 5~35% 또는 관능기의 함량 1.2~8%의 에틸렌계 접착·접착소재 제조 시설
	5)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기술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경량 수송기기 부품의 구조접착에 사용되는 전단강도 25MPa 이상, 저온 충격강도 20N/mm 이상, T-박리강도 250N/25mm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갖는 접착소재 제조 기술과 전자부품의 접착에 사용되는 WVTR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0g/m ² ·24h 이하 및 20kV/mm 이상의 전기절연성을 갖는 비할로젠형 접착소재 제조시설
사. 회소 금속 · 핵 심소 재	1)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사염화타이타늄(TiCl ₄),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이산화 타이타늄(TiO ₂) 등의 소재를 제조 및 부품화하는 시설
	2) 고순도 몰리브덴 금속·탄화물 분말 및 금속피 제조 기술	순도 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분말, 순도 99% 이상의 몰리브덴 탄화물 분말 및 순도 9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피를 제조·가공하는 시설
	3)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 기술	결정립도 5μm 이하 소결체 제조 및 결정립 주변 나노단위 두께의 중희토 확산층 형성 등을 통해 기존 자석 대비 중희토 함유량을 50% 이상 절감하여 고기능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시설
	4)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소재 생산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운송·발전·산업용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기배출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소재 제조시설

		기술	
10. 로 봇	가. 첨단 제조 및 산 업로 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 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 를 핸들링하며 5Port 이상 대응 가능(수평 이송범 위 2,100mm 이상 및 수직 이송범위 900mm 이 상)한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2) 차세대 태양 전지(Solar c ell) 제조 로 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고중량 기판을 핸들링할 수 있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3) 실내외 자율 이동·작업 수행 로봇	농업, 건설, 물류, 보안·감시 분야에서 광범위 거 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 서 경로를 계획하여 주행하고(미리 정해진 경로 를 따라가는 방식은 제외),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 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4) 평판 디스플레이(FPD) 이송로봇 기 술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고중량(400k g 이상)의 FPD(Flat Panel Display) 및 마스크를 이송하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5) 협동기반 차 세대 제조로 봇 기술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초소형 (가만하중 1kg 미만) 및 중대형(가만하중 25kg 이상)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다. 의료 및 생 활로 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 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재활이 목적인 의 료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2) 간병 및 케 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 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 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 하고 홍보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4) 원격현실(T	자율이동기능, 진단·지시용 매니플레이터 및 얼	

		ele-presence) 로봇 기술	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료·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으로서 심부름, 가사작업 및 이동 보조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라. 로봇 공통	1)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를 제작하는 시설
		2) 웨어러블 로봇 기술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추종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11. 항공·우주	가. 무인 이동체	1)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2)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일정 중량(10kg) 이상 물품을 100% 신뢰성을 확보한 비가시권 비행으로 안전하게 운송 가능한 드론과 기능개선에 필요한 소재(열전도율 5kcal/m·h 대비 10% 이상 개선)·부품(세계 최고 CPU 속도대비 약 66% 이상 처리성능 개선)·장비(다지점 배달용 물품 적재함, 물품배송 드론용 도킹스테이션 등의 경량화)를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3)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과 관련한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나. 우주	위성탑재체 부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

		분품 개발기술	상레이더 탑재체, 통신·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 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을 제조하는 시설
12. 첨단 소재·부품·장비	가. 첨단 소재	1)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 강판 제조 기술	550℃에서 200시간 유지 가능한 내열성과 SST(Stainless Steel) 2400(KSD9502)시간 보증 가능한 내식성이 우수한 고성능 알루미늄 도금강판을 제조·가공하는 시설
		2)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기술	순도 99.9%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를 위한 합성, 가공, 고순도화, 고밀도화 등의 제조시설
		3) 고기능성 인조흑연 제조 기술	인조흑연 제조용 피치 및 코크스 제조 시설, 전극봉·등방블록·흑연분말 성형 및 2,800℃ 이상의 열처리를 통한 흑연화 제조 시설
		4)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 강판 제조 기술	규소 원소를 강중에 침투시켜 고규소(Si 함량 4~7%) 저철손 특성을 보유한 전기강판을 제조하는 시설
		5) 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기술	MLCC용 80nm 이하급 초미세 니켈분말 합성 및 이를 활용한 초박형 내부전극용 초미세 니켈 페이스트 제조시설
나. 첨단 부품		1)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구름베어링의 일종으로 내외륜 사이에 다수의 볼 또는 롤러를 삽입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고속운전을 돕거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밀도 P5급 이상의 기계부품 설계·제조 시설
		2)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제조 기술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330 Bar 이상 고압의 유체 에너지를 작업자의 작업의도에 따라 각 유압 액추에이터, 선회 및 주행의 유압모터 등에 공급하며, B5 10,000시간 이상의 높은 내구 신뢰성을 가지는 메인 컨트롤 밸브 부품 설계·제조 시설
		3) 고정밀 볼스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정밀도 C3급

	크류 설계 · 제조기술	이상, 축방향 공차 5 μ m 이내의 동력전달부품 설계 · 제조 시설
	4)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설계 · 제조기술	자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고, 윤활제가 필요 없이 극저온(-250 $^{\circ}$ C 내외) 또는 고온(300 $^{\circ}$ C 이상), 진공에서 축의 회전 궤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설계 · 제조 시설
	5) 고성능 터보식 펌프 설계 · 제조기술	임펠러 및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의 운동 에너지를 유체 · 기체의 압력에너지로 전환하여 2,500L/s 이상의 배기속도 및 1.3x10 ⁻⁹ mbar 이상의 최고 진공도를 만드는 터보식 펌프의 설계 · 제조 시설
	6) 특수 렌즈 소재 · 부품 · 장비 제조 기술	고배율[굴절률(nd) 2.0 이상], 야간 투시[원적외선(파장 8~12 μ m) 투과율 50% 이상], 자외선투과[자외광(193nm) 투과율 80% 이상] 등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카메라 구성에 필요한 특수 광학소재의 소재 · 부품 · 장비 제조 시설
다. 첨단 장비	1) 첨단 머시닝 센터 설계 · 제조기술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를 장착하여, 밀링, 드릴링, 보링가공 등 여러 공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정밀도 5 μ m 이내, 동시 제어 5축 이상, 최대 스피들 속도 12,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의 설계 · 제조 기술(가공 회전수, 축 이동, 진동오차 제어 등 머시닝 센터의 고정밀 작업을 제어하는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모듈 관련 기술 포함) 제조 시설
	2) 열간 등방압 정수압 프레스 설계 · 제조 기술	기체 또는 액체를 압력매체로 활용하여 1,500 $^{\circ}$ C 이상에서 작동하면서 1분당 최고 50 $^{\circ}$ C의 속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금속 소재를 모든 방향에서 100MPa 이상의 정수압 또는 등방압 조건으로 가압하는 직경 1,000mm 이상의 프레스 장비 설계 · 제조 시설
	3) 연삭가공기 설계 · 제조 기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고정도의 광물입자를 결합제로 고정시킨 슷들을 이용하여 평면 · 원통 등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설계 · 제조 시설
	4) 첨단 터닝센터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절삭 공구가 상대 이동하는 가공정밀도 5 μ m 이

			내, 최대 스피들 속도 3,000rpm 이상의 절삭가공 장비 설계·제조 시설(ISO 7등급 이하의 기어 제조를 위한 고속 스카이빙 가공장비 관련 시설 포함)
		5) 첨단 회전 성형기 설계·제조 기술	다축 정밀 동시제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하는 주축과 롤러, 맨드릴을 이용하여 최대 성형률 하중 60kN 이상, 최대 성형품 직경 500mm 이상, 성형 정밀도 $\pm 0.5\text{mm}$ 를 충족하는 성형 장비 설계·제조 시설
		6) 첨단 밸런싱 머신 설계·제조기술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회전부의 불균일한 질량 분포를 측정 후, 베어링으로 전달되는 힘이나 진동을 국제규격(ISO 21940-21) 규정 이내가 되도록 불균일 질량을 교정하는 장비 설계·제조 시설
		7)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절단, 천공, 용접, 정밀가공 등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가공헤드로 공작물을 용융·증발시켜서 분리하는 5축 이상의 레이저 가공장비를 설계·제조하는 시설
		8) 방전가공기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공작물과 전극 사이에 불꽃 방전을 일으켜 티타늄, 초경합금 등 난삭재의 마이크로급 초정밀 가공을 수행하는 방전가공 장비 및 핵심요소부품의 설계·제조 시설
13. 탄소중립	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1)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화학공정 및 선박 등에서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포집·분리하는 공정시설,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정제하는 시설
		2) 연소 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포집·분리하는 공정시설,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정제하는 시설
		3) 순산소 연소 기술 및 저가	공기 연소 대신 산소를 직접 연소하거나 매체순환연소(Chemical Looping Combustion)을 통해

	산소 대량 제조기술	별도의 분리공정 없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순산소 연소시설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후 저장에 필요한 지하공간을 탐사하기 위한 물리탐사 및 시추시설
	5)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송하기 위한 압축·액화 시설, 수송 시설,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 시설, 이산화탄소의 거동 및 누출을 모니터링 하는 시설
	6)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활용하여 화학·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
	7)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화, 화학적·생물학적 변환을 통해 연료·화학물·건축소재 등을 재생산하는 시설
나. 수소	1) 삭제 <2023. 6. 7.>	
	2) 부생수소 생산기술	철강제조공정, 석유화학공정, 가성소다 생산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분리 정제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3) 삭제 <2023. 6. 7.>	
	4)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 기술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의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냉열 이용 예냉사이클, 수소액화공정에 필요한 부품(압축기·팽창기 등)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5) 삭제 <2024. 3. 22.>	
	6) 삭제 <2024. 3. 22.>	
	7) 삭제 <2023. 6. 7.>	
	8) 삭제 <2023. 6. 7.>	

	9)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 및 증발가스 처리 기술	액화수소 운반선 내에 액화수소를 저장·적하역하기 위한 극저온 화물창을 제조하는 시설 및 증발가스 처리를 위한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10) 암모니아 발전 기술	암모니아 연료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석탄 또는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 및 연료전지, 가스터빈, 미분탄 보일러 및 유동층 보일러에 적용 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시설
다. 신재생에너지	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기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에서 중저온(650°C 이하)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출력효율이 높은 금속·연료극 지지형셀, 셀·분리판 등이 결합되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스택, 스택을 결합하여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발전효율 50% 이상인 4kW급 이상)을 제조하는 시설
	2) 삭제 <2023. 6. 7.>	
	3)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소재 기술	650°C 이하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전도 세라믹(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4) 페로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고효율성 및 고내구성을 가진 대면적 웨이퍼, 광활성층, 전자·정공수송층, 투명전극, 금속전극, 금속리본, 봉지, 경량 전후면 외장 재료 등의 핵심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및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대

태양전지 핵 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면적·고효율 셀과 고내구성·고출력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대면적 제조장비, 연속 공정 기술 포함)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 서 회전동력 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 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 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 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축(shaft)·베어링(bearing)·이음쇠(coupling)·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를 제조하는 시설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 서 발전기 및 변환기 제조 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를 제조하는 시설 및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를 제조하는 시설
7) 풍력발전 블 레이드 기술	8MW급 이상의 풍력발전 블레이드(Blade)를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8)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중축열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9)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연소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수소, 항공유 등을 생산하는 시설
10) 폐기물 액 화·가스화 기술	재생폐기물로부터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열분해·가스화 시설
11) 미활용 폐 열 회수·활 용을 통한 발 전 기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중저온(90 ⁰ C 이하) 미활용 폐열을 초임계 이산화탄소·유기냉매·열전소자 등을 통해 회수한 후 친환경 전기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발전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12) 해상풍력	대용량 전력 전송을 위한 고밀도·장조장 특성을

	발전단지 내 · 외부 전력 망에 사용되 는 해저케이 블 시스템 기 술	갖는 해저케이블(HVAC 345kV 이상 또는 HVD C 500kV 이상)과 이를 변전소 등에 연결하는 내 부전력망용 해저케이블(semi-wet 방식, 66kV 이상)을 제조하는 시설
	13)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 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 화 기술	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M10 이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고효율(출력밀도 210W/m ² 이상)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14) 저탄소 태 양광 모듈 설 계·제조· 설치 기술	탄소배출량 655kg·CO ₂ /kW 이하의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시설 및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라. 산업 공정	1) 삭제 <2024. 3. 22.>	
	2) 함수소가스 활용 고로취 입기술	제철소 발생 함수소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고로 공정의 연료로 활용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시설
	3) 복합취련전 로 활용 스크 랩 다량 사용 기술	복합취련기술을 활용한 전로공정에서 스크랩 사용량을 높임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시설
	4)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 멘트 생산기 술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를 제조 및 양생하는 시설
	5) 산화칼슘 함 유 비탄산염 산업부산물 의 시멘트 원 료화 기술	산화칼슘(CaO) 함유 비탄산염 원료 전처리 시설
	6) 이산화탄소 저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연·원료 대 체기술	석회석 등 탄산염 광물을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고, 수소·바이오매스·LNG 등 친환경 열원과 가연성 순환연료를 사용하는 소성시설

7) 시멘트 소성 공정 유연탄 대체 기술	유연탄을 대체하기 위한 연료(가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 전처리 및 제조 시설, 고효율 연소를 위한 시설 및 연소 후처리 시설
8) 석유계 고분 자 대체 바이 오 케미칼 원 료 생산기술	바이오 매스를 처리하여 활용 가능한 당, 지질, 글리세롤 등을 바이오 고분자의 원료인 케미칼 원료로 전환하여 생산하는 시설
9) 전기가열 나 프타 분해기 술	전기저항/유도 가열 방식을 활용한 나프타 분해 공정을 통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제조하는 시설
10) 반도체· 디스플레이 식각·증착 공정의 대체 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식각 및 증착용 온실가스를 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낮은 가스로 대체하기 위한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1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 소 배출 저감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가스를 LNG, 전기 등을 활용하여 고온에서 분해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
12) 해상(FSR U) 및 육상 LNG터미널 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 합형 재기화 기술	LNG 냉열의 회수 공정을 이용하여 재기화 송출 용량이 750 MMSCFD(Million Metric Standard Cubic Feet per Day) 이상이고, 소요전력의 20% 이상을 절감하고 온실가스의 20%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냉열 발전이 결합된 재기화 시스템을 제작하는 시설
13) 철강 가열 공정 탄소연 료 대체기술	단조, 압연 공정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저탄소 연료(수소, 암모니아)로 전환하거나,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재순환시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14) 전기로 저탄소원료(직접환원철·수소환원철) 활용기술	전기로 용해공정에서 저탄소 원료인 직접환원철 또는 수소환원철로 철강을 제조하는 시설	
	15)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전기로 용탕과 고로 용선을 혼합하는 합탕기술을 통해 기존 고로공정 대비 20% 이상 탄소배출이 저감된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16)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선별기술	철스크랩을 전기로공정에 투입할 때 데이터화된 영상이미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철스크랩을 판정·선별하는 시설	
	마. 에너지효율·수송	1)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배전계통을 보호·제어하기 위한 지능형 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를 제조하는 시설,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2) 지능형 검침 인프라 설계·제조 기술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3) 히트펌프 적용 온도 범위 확대 및 효율 향상 기술	친환경 냉매 개발, 열교환기 성능 향상, 사용 열원 확대를 통해 고온·저온의 열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히트펌프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4) 친환경 굴착기 개발 기술		순수 전기(모터), 하이브리드(모터와 엔진), 바이오연료(엔진)로 구동할 수 있는 굴착기를 설계·제조하는 시설	
5)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연료공급 및 후처리 기술		암모니아를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및 연소 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의 설계·제조·시험·평가를 위한 시설	
	6) 극저온 액체	액화질소(끓는 점 -196℃), 액화수소(끓는 점 -2	

		저장 및 이송용 극저온 냉동기술	53℃) 등 -196℃ 이하의 극저온 액체를 자체 증발로 인한 손실 없이 저장 및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저온 냉동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7)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연료전지 및 배터리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을 선박의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선박 발전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8)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제조 기술	IEC 60034-30-1규격의 IE4급 이상의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를 제조하는 시설
14. 방위 산업	가. 방산 장비	1) 추진체계 기술	유무인 항공기, 기동장비, 유도무기, 함정 등에 장착하는 터보제트엔진, 터보샤프트엔진, 터보프롭엔진, 터보팬엔진, 왕복엔진의 완제엔진, 부체계(엔진제어, 연료, 윤활, 기어박스 등), 구성품(팬, 압축기, 연소기, 터빈, 배기노즐 등), 소재(내열·경량합금, 복합재, 고온코팅 등)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하는 시설
		2) 군사위성체계 기술	군사용 위성체계 중 감시정찰 및 통신위성의 위성체계(전력체계, 자세제어체계, 위성탑재컴퓨터, 송수신체계, 구조체 등), 구성품(위성통신송수신안테나, 광학장비, 영상레이더, 항법체계 등), 관련 소재, 지상장비, 발사체(고체연료)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하는 시설
		3) 방위산업물자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 또는 그 소재·부품·장비의 자체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방위산업물자등 또는 그 소재·부품·장비의 개조, 개발, 형상변경, 성능개량, 양산을 위한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시설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나. 전투 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에 필요한 환경인식기술, 위치추정기술, 자율임무 수행기술, 유무인협업기술, 무선통신기술, 네트워크 보안기술, 의사결정지원기술, 원격통제기술 등을 활용하여 유무인복합체계를 설계·제작·조립하는 시설

비고: 위 표에서 소재·부품·장비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장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6. 3. 00.>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

영 별표 7의2의 기술		사업화 시설
분야	국가전략기술	
1. 반도체	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 · 제조 기술	16nm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 시설
	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AM, PIM, HBM, LLC, CXL, SOM) 설계 · 제조 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AM, PIM, HBM, LLC, CXL, SOM) 초거대 AI 응용을 위해 CPU와 메모리 간의 병목현상 해결을 목적으로 메모리반도체에 전용 AI 프로세서를 추가한 메모리시스템인 PIM(Processing In Memory), HBM(High Bandwidth Memory), LLC(Last Level Cache), CXL(Compute eXpress Link), SOM(Selector Only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
	다.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 · 제조 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가전, 의료기기 및 핸드폰 등 차세대 디지털 기기 SoC의 주파수 조정 기능 반도체(RF switch 등 RF반도체), 디지털 · 아날로그 신호의 데이터 변환 반도체(인버터/컨버터, Mixed signal 반도체 등), 메모리반도체와의 원칩화를 통한 컨트롤 IC(eNVM) 및 IoT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IoT·웨어러블 SoC(System on Chip)의 제조 시설
	라.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물리적 · 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 · 판단 · 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 · 센서(sensor) · 액추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 μ m이하 CMOS 이

	<p>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고성능 센서 및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시설</p>
<p>마.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p>	<p>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및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EC-Q100을 만족하는 MCU (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제조 시설</p>
<p>바. 에너지효율 향상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기술</p>	<p>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실리콘 기반의 에너지효율 향상 반도체(SJ(Super Junction) MOSFET, IGBT, 화합물(SiC, GaN, Ga₂O₃)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MOSFET, IGBT) 및 모듈의 제조·패키징 시설</p>
<p>사. 에너지효율 향상 전력반도체(BCDMOS, UHV, 고전압 아날로그 IC) 설계·제조기술(0.35μm이하)</p>	<p>실리콘 기반의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차세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초절전 전력반도체(0.35μm이하 BCDMOS, 800V 이상 UHV, 12V 이상 고전압 아날로그 IC) 제조 시설</p>
<p>아.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p>	<p>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차세대 디지털기기 및 차량의 디스플레이(OLED, Flexible, 쿼터텀닷, 롤러블, 폴더블, 마이크로LED, Mini LED, 4K·120Hz급 이상 고해상도 LCD 등)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DDI), 디스플레이 패널의 영상 정보를 변환·조정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반도체(T-Con),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와 패널에 필요한 전원전압을 생성·제어하는 반도체(PMIC)를 제조하는 시설</p>

<p>자.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 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p>	<p>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 시설</p>
<p>차.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p>	<p>반도체 패키징 기술(WLP, PLP, SiP, 플립칩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테스트 및 패키징·테스트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시설</p>
<p>카.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 기술</p>	<p>16nm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7nm 이하급 파운드리 SoC, 에피텍셜 반도체용의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SiC, GaN, Ga₂O₃) 기판을 제조하는 시설</p>
<p>타. 첨단 메모리 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p>	<p>첨단 메모리반도체(16nm급 이하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및 SoC 반도체 파운드리의 소재,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p>
<p>파.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p>	<p>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p>

st) 개발 및 제조기술	성, 현상(D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포토레지스트 및 관련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하.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 ₂)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제조하는 시설
거.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너.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icle), 합성 퀴즈, 스테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제조하는 시설
더.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산 제조 기술 (1,000 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 시설
러. 고순도 석영 (퀴즈)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 제조 시설
머.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cm ²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μm 이하) 형성 재료 제조 시설
버.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 기술	1) 동작속도 250MHz 이상의 SoC(System on Chip) 반도체, 6GHz 이상의 주파수를 지원하는 RF(Radio Frequency) 반도체, AEC-Q100을 만족하는 차량용 반도체, 4,800만화소 이상의 모바일용 CMOS 이미지센서, 내전압 1,000V 이상의 전력반도체, 소스채널 900개 이상의 OLED용 DDI(Display Driver IC)의 양·불량 여부를 전기적 특성검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 시설

		2) 1)에 따른 테스트에 사용되는 최대 검사속도 500Mbps 이상의 주검사장비, 접촉정확도 1 μ m 이하의 프로브스테이션(Probe Station),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술 기반의 프로브카드를 제조하는 시설
	고성능 AI 가속기용 CCL(Copper Clad Laminate)로서 처. AI 컴퓨팅을 위한 차세대 MCM(Multi -Chip Modu le)의 설계· 제조 및 관련 신소재·부 품 개발 기술	고속 신호 전송을 위한 저손실 특성(Ultra Low Loss) Df 0.002미만, 고밀도 전력 처리와 효과적 열분산을 위한 열신뢰성 평가(Thermal Cycling Test) 기준 -5 $^{\circ}$ C~160 $^{\circ}$ C/500 cycles 이상, 대규모 데이터 전송 및 전력 분배를 위한 PCB 구조 18층 이상, 반도체 및 부품 실장 안정성 특성 CTE 1.5% 이하의 것 제조를 위한 Pre-preg 설비(분말 원재료 분산 장치, 이물 Filtering 장치, 이물 검출 장치, 두께 측정 장치 등)와 Thin-core 설비(자성 이물 검출 장치 등)
2. 이차전지	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팩의 중량당 에너지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모듈 및 팩 제조 시설
	나.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이차전지 셀을 기준으로 중량당 에너지밀도가 265Wh/kg 이상 또는 1시간 기준 방전출력 대비 6배 이상의 고출력(6C-rate 이상) 또는 충방전 1,000회 이상의 장수명을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시설
	다.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수명이 종료(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된 전기동력 자동차 배터리를 검사·분해·평가하는 시설
	라.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수명이 종료된 사용후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재자원화가 가능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 (리튬 35% 이상, 니켈/코발트 90% 이상 회수)
	마.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중량당 방전용량이 600mAh/g 이상인 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시설

	제조 기술	
	바.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고용량 양극재 및 리튬계 원자재, 금속전구체 등 양극재 원료와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사.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충방전 1,000회 이상이 가능한 장수명 음극재 및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카본계 또는 금속계의 원료와 이의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아.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수명특성, 신뢰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 과 저온특성, 장수명,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전해액 및 이와 관련된 원료·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자.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배터리 장기 사용을 위한 패키징 부품(과우치, 캔, 리드 탭)과 고성능 배터리를 위한 전극용 소재부품(도전재, 바인더, 집전체) 및 이와 관련된 원료·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차.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금속이온 원료로부터 결정화, 정련, 전환 및 정제 기술을 활용하여 중간체 및 순도 99% 이상의 양극재용 금속화합물(수산화리튬, 탄산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로 제조·가공하는 시설
3. 백신	가.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해(예방용 백신)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백터 등)을 스크리닝하고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
	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또는 백신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물질(면역보조제)을 제조하는 시설
	다.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4. 디스플레이	가.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	기관(유리, 플렉시블, 스트레처블) 위에 저온폴리실리콘산화물(LTPO)·저온폴리실리콘(LTPS)·산화물(Oxide) TFT를 형성한 백플레인 또는 실리콘(Silicon)에 구동소자를 형성한 웨이퍼에 발광특성을 가진 유기물

동 기술	을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형성하는 FHD 이상의 고화질 또는 고성능(고휘도, 저소비전력)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조립하는 AMOLED 패널을 제조하는 시설
나. 친환경 QD (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반치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40나노미터(nm) 이하인 RoHS(유럽 6대 제한물질 환경규제) 충족 QD 소재를 노광 또는 직접 패터닝 방식으로 제조한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조립하는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시설
다.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1 \times 10^{15}/\text{cm}^3$ 이하) 에피(Epi)공정을 적용한 단축 50 μm 크기 이하의 R·G·B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조립하는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시설
라.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전자이동도 $9\text{cm}^2/\text{Vs}$ 이상의 산화물 TFT(Thin Film Transistor)와 유기물(발광·공통층) 소재 및 양자점(QD)·화소격벽·폴리이미드(PI) 코팅소재 등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마.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전자이동도 $9\text{cm}^2/\text{Vs}$ 이상의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공정에 사용되는 노광기, 물리 또는 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식각기,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유기증착기(Evaporation), 잉크젯장비(Inkjet), 봉지장비(Encapsulation), FMM(Fine Metal Mask) 등 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와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사.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두께 100 μm 이하 초박형유리(Ultra Thin Glass, UTG) 및 UTG 광학증착·코팅 소재, 투과율 80% 이상인 초박형유기·무기 하이브리드 필름 등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설
	아. 마이크로LED 에피(Epi) · 전사 · 접합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고효율, 저결함 에피성장을 위한 고순도(99% 이상) 금속유기(Metal-Organic) 가스와 기판(substrate), 전극 형성을 위한 접합소재, 외부양자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 청색 20%, 녹색 10%, 적색 5% 이상의 에피기판 · 칩 등 화소 형성을 위한 소재 · 부품 제조 시설 및 Micro LED 성장을 위한 에피 공정, 에피 LED 칩 제조를 위한 분리 · 보호막 공정, 백플레인 기판의 화소 영역에 칩을 전사 · 접합하는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장비 제조 시설
5. 수소	가.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재생에너지 · 원자력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계통제약 전력(미활용전력) 등을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청정수소를 생산 · 공급하는 수전해 공정의 소재 · 부품 · 스택(stack) · 시스템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나.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로부터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다. 수소연료 저장 · 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이동수단에 수소연료를 저장 · 공급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라.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 · 압축 · 저장 · 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품을 설계 및 제작하는 시설
	마.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스택 출력밀도 3.1kW/L 이상 또는 연료전지 스택 운전효율[저위발열량(LHV, Lower Heating Value)에 따라 산출된 운전효율을 말한다] 60% 이상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차용 고밀도 ·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바.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를 제조하는 시설

	사.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의 부품 설계·제작·조립·시험·평가를 위한 시설
	아. 수소환원제철 기술	철강 제조공정에서 수소(H ₂)를 사용하여 철광석을 환원하고, 전기용융로에서 쇳물(용선)을 생산하는 시설
	자.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수소를 고압기체, 액체, 암모니아, 액상 유기물 수소 저장체(LOHC) 등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고체에 흡착 또는 흡착하여 저장하기 위한 시설
	차.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수소(H ₂)와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나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젤, 항공유, 액화석유가스, 나프타를 생산하는 시설
6.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가.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라이다 센서(LIDAR sensor)를 제작하는 시설
	나.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 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감속기·변속기 등을 고효율화하는 구동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및 해당 고효율화 구동시스템이 적용된 전기동력 자동차를 제조하는 시설
	다.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 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동력 자동차와 연결되는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계·제조하는 시설
	라.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 시스템 기술	인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차량환경에서 고속처리하는 컴퓨팅모듈 통합시스템과 차량 내·외 통신부품을 설계·제조하는 시설
	마.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선박의 자율항해, 원격제어, 경제운항 및 관리운항을 지원하는 기술로서 선박 주변 해상 상황을 인지·분석하여 최적 경로로 운항하는 자율운항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플랫폼 제작 기술, 기관·화물 등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기술, 수집된 정보를 처리·

		분석하는 선박 모니터링·시뮬레이션 기술, 기관제어·고장예지·원격진단·원격정비 등의 선박 통합제어 관리 기술, 선박-육상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 및 ROC (Remote Operation Center) 기술을 구현하는 장치·설비를 설계·제조·시험·평가하는 시설
	바.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가스화물(LNG·LPG·에탄·암모니아·수소·이산화탄소를 포함한다)의 저장·운송·적하역시스템(화물창, 연료탱크 및 카고핸들링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환경친화적 에너지(LNG·LPG·암모니아·수소·에탄·메탄올·에탄올·원자력 등을 포함한다) 및 전기에너지를 추진동력원이나 선내 전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추진·발전시스템(연료공급시스템, 동력발생장치, 에너지저장·전력변환·배전·전력관리 시스템, 추진장치 및 제어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의 소재 개발 및 설계·제조하는 시설
	사.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기반 설계·생산 공정 구축을 위한 설계 자동화 기술 및 건조 공정의 데이터 취득·분석·검증을 통한 생산운영 기술을 구현하는 장치·설비를 제작·실증하는 시설
7. 바이오의약품	가. 바이오 신약 [바이오 베타 (Bio Better) 를 포함한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정제·충전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호르몬·펩타이드·핵산·핵산유도체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유전자치료제·항체 치료제·세포치료제를 제조하는 시설
	나.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배지, 첨가물 등), 분리·정제·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바이오 소재(버퍼, 필터) 및 완제품 생산을 위해 제형화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하는 시설
	라. 바이오의약품 부품·장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 장비와 바이오의약품 품질 분석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장비·부품을 설계·제조

	비 설계·제조 기술	하는 시설
8. 인공지능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공통	영 별표 7의2 제8호 각 목의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활용되는 서버(GPU, NP U를 포함한다), 스토리지, 전력공급시설, 공기조화시설, 냉각시설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이와 연계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비고: 위 표에서 소재·부품·장비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장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10]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11 관련)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1. 기획	가. 시나리오	1) 원작·각본·각색료
	나. 기획비	1) 기획자 인건비
	다. 인세	1) 인센티브를 제외한 웹툰 작가에게 지급하는 계약금, 선지급금, 원고료
2. 제작	가. 작가비	1) 작가 인건비
	나. 제작프로그램비	1) 웹툰 제작(작화, 편집) 프로그램 사용비
	다. 디자인비	1) 디자이너 인건비 2) 이미지 샘플 구입비
3. 편집	가. 편집비	1) 교정, 윤문, 채색, 번역, 식자 인력의 인건비 2) 판면 작업 인력의 인건비(페이지 편집)
	나. 감수료	1) 감수자 인건비

비고 :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웹툰콘텐츠 외에 다른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세액공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2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3 신청 내용	6 구 분	7 근거법령	8 코드	9 공제율	10 대상세액	11 공제세액
10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1			
10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103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4항	14M			
104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8항	18D			
105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106 교육기관 무상기증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6항	18R			
107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5B			
108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3L			
109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0E			
110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3M			
11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6A			
11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0D			
113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6B			
11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11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11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117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118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3항	15C			
119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영 제12조의3제15항	18N			
120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등 인수 세액공제		영 제12조의3제15항	18P			
12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122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영 제21조제13항	13W			
123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영 제21조제13항	13X			
124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영 제21조제13항	13Y			
125 통합투자세액공제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영 제21조제13항	13Z			
126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영 제21조제13항	1B1			
127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영 제21조제13항	1B2			
128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영 제21조제13항	1B3			
129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영 제21조제13항	1B9			
130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I			
131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4			
13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7			
13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A			
134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2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135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5			
137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B			
138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B			
13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	영 제22조의10제6항	18C			
14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공제)	영 제22조의10제6항	18B			
141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5항	18B			
14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2제5항	15A			
14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14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145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4X			
146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147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148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14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150 통합고용세액공제	영 제26조의8제11항	18S			
151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영 제26조의8제11항	18B			
152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	영 제26조의8제11항	18B			
153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154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4항 (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H			
15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156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157 상환대료를 인정한 암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6조의3제8항	10B			
158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9조의11제4항	18Q			
159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A			
16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161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162 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15제6항	18B			
163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5항	140			
164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165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I			
166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K			
167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R			
168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16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9제2항	10C			
170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32제5항	1F1			
171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7조의4제4항	14W			
17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173 세액공제 합계		1A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에 별도로 적습니다.
7. ⑦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출연금 사용명세서

(앞쪽)

사업연도 ~
------	-------------------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소재지 (전화번호:)	

상생협력출연금 사용명세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법인 명세

⑥ 법인명 및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출연연월	⑨ 출연금액
합계			

2. 출연금 사용명세

⑩ 수혜대상 법인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사용연월	⑬ 사용금액	⑭ 지원목적(분류코드)
합계				

3.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기금 및 사용명세

⑮ 사업연도	⑯ 전기 출연금 이월액	⑰ 당기 출연금 적립액	⑱ 당기 출연금 사용액	⑲ 당기말 잔액(미사용액)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2. 출연금 사용 명세"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 "14 지원목적(분류코드)"란은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해 코드를 적습니다.

구 분	기금 사용 목적	코드
보증 또는 대출	협력중소기업 보증 등을 통한 간접지원(출연금 미지출)	11
	협력중소기업 출연금 지출을 통한 직접지원(대위변제 포함)	12
	협력중견기업 보증 등을 통한 간접지원(출연금 미지출)	13
	협력중견기업 출연금 지출을 통한 직접지원(대위변제 포함)	14
연구개발 지원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지원	21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시험용 시설 투자 지원	22
	대기업이 보유한 연구용·시험용 시설 활용 지원	23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24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보호 지원	25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26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을 협력중소기업에 파견 시 협력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소요비용 지원	27
인력개발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지원	31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훈련시설 활용 지원	32
	협력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 지원	33
	협력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시설 투자 지원	34
생산성 향상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제21조에 따른 시설·설비·시스템을 말한다) 투자 지원	41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42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자문 지원 및 자문으로 도출된 과제의 실행 지원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44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의 제공 지원	45
	협력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46
	협력중소기업의 안전설비(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투자 지원	47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51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	5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기술 도입 지원	61
	협력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 중단으로 인한 단기자금 압박 방지를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6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 시스템 구축 지원	63

3. 출연금을 직접 지출하지는 않았으나 보증 등을 통해서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한 경우에 "13 사용금액"란은 해당 지원한 금액을 적습니다(10원의 출연금으로 100원을 보증하였을 경우에는 10원을 적습니다).
4. "16 전기 출연금 이월액"란은 전기의 "19 당기말 잔액(미사용액)"을 적습니다.
5. "17 당기 출연금 적립액"란의 해당 사업연도 부분은 "9 출연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18 당기 출연금 사용액"란의 해당 사업연도 부분은 "13 사용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 합계 란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2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⑩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5조제26항	110				
⑩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5조제26항	111				
⑩3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74				
⑩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3E				
⑩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⑩6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⑩7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⑩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조의2제10항	17C				
⑩9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조의2제10항	179				
⑩10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 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⑩1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구 영 제30조의2제7항	192				
⑩1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 전환에 대한 감면	구 영 제30조의2제7항	13A				
⑩13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⑩14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인 구감소지역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9항 (구 영 제60조제5항 포함)	116				
⑩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영 제60조제5항	169				
⑩16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9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8				
⑩17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60조의2제16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9				
⑩18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8항	117				
⑩19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총즉 감면세액
⑩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⑪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⑫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	11L				
⑭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	11M				
⑮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2019.12.31.법률 제1683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⑯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8항	13I				
⑰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5항	13N				
⑱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9의8제7항	11N				
⑲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9의8제7항	13S				
⑳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 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99조의10제5항	17D				
㉑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㉒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 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제13항	11F				
㉓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 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제13항	11H				
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4제5항	18I				
㉕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4제5항	13P				
㉖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5제8항	182				
㉗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5제8항	13Q				
㉘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5제8항	158				
㉙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제7항	197				
㉚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제7항	13R				
㉛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제7항	198				
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 역 또는 낙후지역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영 제116조의2제7항	1D2				

⑭③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E1			
⑭④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D3			
⑭⑤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D4			
⑭⑥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E2			
⑭⑦ 해양박람회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D5			
⑭⑧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D6			
⑭⑨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E3			
⑭⑩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D7			
⑭⑪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D8			
⑭⑫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E4			
⑭⑬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지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D9			
⑭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5제8항	11C			
⑭⑮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5제8항	13T			
⑭⑯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6제11항	11G			
⑭⑰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6제11항	13U			
⑭⑱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8항	17A			
⑭⑲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8항	13H			
⑭⑳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8항	17B			
⑭㉑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8항	13V			
⑭㉒ 기획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36제8항	1D1			
⑭㉓ 기획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36제8항	1C1			
⑭㉔ 기타		164			
⑭㉕ 세액감면 합계		1A4			

- 4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⑩, ⑪, ⑫, ⑬, ⑭부터 ⑯까지에 대해 적용)
 - ⑩는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전 입주기업은 제외함(A방식)
 ⑫, ⑬는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⑩, ⑪, ⑭부터 ⑯까지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중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 우수 인력의 경우에는 2,000만원)]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B	일반기업		서비스업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 자산 투자누계액		⑰ 일반감면한도 (=⑮)
	⑯ 투자기준 감면한도 (⑮ × 50%)		⑳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a, b]) a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b 투자누계액(⑮ × 100%)
	⑰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a, b]) a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b 투자누계액(⑮ × 20%)		
⑱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⑯+⑰)		㉑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Max [⑰, ⑳])	

㉒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⑱ - ⑩) 또는 (㉑ - ⑩)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구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㉓ 합계	㉔ 개월수	㉕ 상시 근로자수 (=㉓ ÷ 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㉖
직전 과세연도																㉗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 전)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	㉘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㉖-㉗)	㉙ 감면한도 (1억원 - 500만원 × ㉘)
1억원	500만원		

6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구분	㉚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근무 개월 수의 합계	㉛ 과세연도 개월수	㉜ 상시 근로자수 (=㉚ ÷ ㉛)
해당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 전)	상시근로자 수 인원당 증가액	㉜ 상시근로자 수	㉝ 감면한도 (1억원 + 2000만원 × ㉜)
1억원	2000만원	0	

7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감면한도 계산

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㉕ 투자기준 감면한도 (㉔ × 70%)	
㉖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한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㉗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감면한도 (㉕ + ㉖)	

8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감면한도 계산

㉘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㉙ 투자기준 감면한도 (㉘ × 70%)	
㉚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 포함)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㉛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㉙ + ㉚)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신청 내용별로 "㉔ 감면율"란, "㉗ 대상세액"란과 "㉘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㉔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㉗ 대상세액"란: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㉘ 감면세액"란: "㉗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㉙ 한도총족 감면세액"란: "㉘ 감면세액"과 "㉚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7. ㉔, ㉗, ㉘ 감면한도 계산 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8.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하며, "구 영"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2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3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계정 과목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재료비 등			
		인원	⑥ 금액	건수	⑦ 금액	건수	⑧ 금액
합 계							
계정 과목	구 분	기타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⑪ 총 계 (⑥+⑦+⑧+⑨+⑩)	
		건수	⑨ 금액	건수	⑩ 금액		
		합 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 (=⑪)	⑬ 직전 4년 발생액 (⑭+⑮+⑯+⑰)	⑭ (직전 1년)	⑮ (직전 2년)	⑯ (직전 3년)	⑰ (직전 4년)
⑱ 직전 4년간 연 평균발생액 (⑬/4)		⑲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⑯)/3]		⑳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⑮+⑯)/2]	
㉑ 증가발생액 (⑫-⑱)					

4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⑳ 대상금액 (= ⑪)	㉓ 공제율			㉔ 공제세액 (㉒×㉓)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㉕ 대상금액 (= ⑪)	㉖ 유예기간 종료연도	㉗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㉘ 공제율	㉙ 공제세액 (㉕×㉘)
					종료 이후 1-3년차 20% (15%) 종료 이후 4-5년차 15% (10%)	
	중견기업	㉚ 대상금액 (= ⑪)	㉛ 공제율			㉜ 공제세액 (㉚×㉛)
			8%			
일반기업	㉛ 대상금액 (= ⑪)	공제율			㉞ 공제세액 (㉛×㉞)	
		㉜ 기본율	㉝ 추가	㉟ 계 (㉜+㉝)		
		0%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⑭<⑱ 경우 공제 제외)		㉟ 대상금액 (= ㉑)	㊱ 공제율		㊲ 공제세액 (㉟×㊱)	*공제율 - 중소기업: 50% - 중견기업: 40% - 대기업: 25%
㊳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㉒와 ㊲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㉕와 ㊲ 중 선택)		중견기업 (㉚와 ㊲ 중 선택)		일반기업 (㉛과 ㊲ 중 선택)

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 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⑥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2)(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의 비용을 적용합니다.
- 재료비 등의 "⑦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3)·4)·5)·6)의 비용을 적용합니다.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의 "⑧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용합니다.
- 기타 연구개발비의 "⑨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용합니다.
- 인력개발비의 "⑩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 비용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의 "㉔ 공제율" 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20%, 3년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는 괄호 안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율의 "㉓ 추가"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⑤, ⑥의 "구분"란: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용합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앞쪽)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2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3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기술명	구분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⑨ 기타 연구개발비	⑩ 합계 (⑥+⑦+⑧+⑨)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⑦ 재료비 등			
합 계							

4 공제세액							
해당 연도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⑪ 대상금액 (= ⑩)	공 제 율			⑮ 공제세액 (⑪ × ⑭)	
			⑫ 기본율	⑬ 추가	⑭ 계 (⑫+⑬)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⑯ 대상금액 (= ⑩)	30%			⑰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도	⑲ 공제세액 (⑯ × ⑲)
			⑱ 기본율	⑳ 추가	㉑ 계 (⑱+⑲)		
			20% 또는 25%				

5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6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어·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2)(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의 비용을 적습니다.
3. "⑦ 재료비 등"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3)·4)·5)·6)의 비용을 적습니다.
4.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습니다.
5.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습니다.
6. "⑬, ⑰ 추가"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7. "⑱ 기본율"란: 20%(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25%)를 적습니다.
8. "⑤, ⑥의 "구분"란: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9. "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_____)

2 과세연도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⑨ 기타 연구개발비	⑩ 합계 (⑥+⑦+⑧+⑨)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⑦ 재료비 등			
합 계							

4 공제세액

해당 연도 공제받을 세액	구분	계정과목	공 제 율				⑮ 공제세액 (⑪×⑭)	
			⑪ 대상금액 (=⑩)	⑫ 기본율		⑬ 추가		⑭ 계 (⑫+⑬)
				40%				
	중소기업		⑮ 대상금액 (=⑩)	⑰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도	공 제 율		⑲ 공제세액 (⑮×⑳)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⑱ 기본율	⑲ 추가		⑳ 계 (⑱+⑲)

5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6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2)(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의 비용을 적용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3)·4)·5)·6)의 비용을 적용합니다.
4.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용합니다.
5.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용합니다.
6. "⑬, ⑰ 추가"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7. "⑱ 기본율"란: 30%(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35%)를 적용합니다.
8. "⑤, ⑥의 "구분"란: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용합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9. "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10. "⑥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과 세 연 도	. . . ~ . . .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연구과제명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합계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전담, []보조, []기타
				[]전담, []보조, []기타
				[]전담, []보조,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건본품 등 (별표 6 1.가.3)	임차료 등 (별표 6 1.가.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비용 (별표 6 1.가.5)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매비용 (별표 6 1.가.6)
합 계					

3.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위탁(재위탁)연구 또는 공동연구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합 계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⑨ 기타 연구개발비			
⑩ 비용구분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⑪ 금액
합 계			

5.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⑫ 비용구분	⑬ 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		⑭ 지급처 또는 구입처		⑮ 금액
	성명	생년월일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합 계					

작성 방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 가. "①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나.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다.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⑥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라.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 마.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 다. "④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⑦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다. "⑥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란은 연구과제 수행 활동을 위탁(재위탁)연구와 공동연구로 구분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라. "⑦ 금액"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의 "⑩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마.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연구과제의 수행 활동이 위탁(재위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아래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기타 연구개발비를 지급처별로 작성합니다.

(단위 : 원)

⑨ 기타 연구개발비			
⑩ 비용구분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⑪ 금액
합 계			17,000,000
직무발명보상금	김00	00.00.00	5,000,000
특허 조사·분석 비용	00특허법인	000-00-00000	12,000,000

다. "⑪ 금액"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기타 연구개발비의 "⑨ 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아래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인력개발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단위 : 원)

⑫ 비용구분	⑬ 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		⑭ 지급처		⑮ 금액
	성명	생년월일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합 계					12,800,000
위탁훈련비	김00	00.00.00	0000본부	000-00-00000	400,000
위탁훈련비	남00	00.00.00	0000기관	000-00-00000	2,400,000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	도00	00.00.00	0000공단	000-00-00000	1,800,000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	라00	00.00.00	0000공단	000-00-00000	3,000,000
생산성 향상 교육			00진흥원	000-00-00000	2,600,000
계약학과 운영비			00대학교	000-00-00000	2,600,000

다. "⑬ 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란: "⑫ 비용구분"란의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가목의 비용(위탁훈련비)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의 비용(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탁훈련비가 훈련대상자별로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훈련비 총액을 훈련대상자 총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훈련대상자별로 "⑮ 금액"란에 적습니다.

라. "⑮ 금액"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인력개발비의 "⑭ 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연구 과제명	② 기술 구분 코드	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전담, []보조, []기타
					[]전담, []보조, []기타
					[]전담, []보조,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④ 연구 과제명	⑤ 기술 구분코드	⑥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가.3))	임차료 등 (별표 6 1.가.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비용 (별표 6 1.가.5))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⑦ 연구 과제명	⑧ 기술 구분코드	⑨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위탁(재위탁) 연구 또는 공동연구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⑩ 금액
합 계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⑫ 연구 과제명	⑬ 기술 구분코드	⑭ 기타 연구개발비		
		⑮ 비용구분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합 계				

작성 방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 연구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 공통 사항

- 가. "①, ④, ⑦, ⑩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나. "②, ⑤, ⑧, ⑬ 기술구분 코드"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0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0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 나. "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중 ②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자체 연구개발비의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 ②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자체 연구개발비의 "⑥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 가. "⑥ 재료비 등"란은 ④ 연구과제 및 ⑤ 기술구분 코드를 구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건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 나. "⑥ 재료비 등" 중 ⑤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자체 연구개발비의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 ⑤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자체 연구개발비의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 비용을 적습니다.
- 나. "⑨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재위탁) 연구와 공동연구로 구분하여 위탁(재위탁) 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기관의 현황 등을 적습니다.
- 다. "⑩ 금액"중 ⑧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⑧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 ⑧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⑧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라. "⑪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연구과제의 수행 활동이 위탁(재위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가. "⑫ 비용구분"란은 ⑫ 연구과제 및 ⑬ 기술구분 코드를 구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작성방법란 제4호나목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⑬ 금액"중 ⑬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 ⑬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1 신청법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3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4 세액공제 금액 (= 20 + 27 + 34 + 45)	
--	--

가. 직접 출자

⑮ 출자일	⑯ 투자기업명	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⑱ 세액공제 대상금액 (= ⑰)	⑲ 공제세액 (= ⑱ × 5%)
년 월 일				
합계				20

나.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해 출자

⑳ 출자일	㉒ 벤처투자조합명 (투자기구명)	㉓ 투자기업명	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㉕ 세액공제 대상금액 (= ㉔)	㉖ 공제세액 (= ㉕ × 5%)
년 월 일					
합계					27

다.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출자

㉘ 벤처투자 목적회사의 벤처기업등 출자일	㉙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㉚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금액	㉛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	㉜ 세액공제 대상금액 (= ㉙ × ㉚ ÷ ㉛)	㉝ 공제세액 (= ㉜ × 5%)
년 월 일					
합계					34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

㉞ 출자일	㉟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명	㊱ 투자기업명	㊲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㊳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	㊴ 세액공제 대상금액 (㉞ 및 ㊳ 중 큰 금액)
년 월 일					
합계			39		42

㊵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	㊶ 초과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 39 - 43)	㊷ 공제세액 (= 42 × 5% + 44 ×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㉗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2. "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벤처투자조합등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합니다)을 통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3. "㉙ 벤처투자목적회사의 벤처기업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란: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한 벤처투자목적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4. "㉚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금액"란: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5. "㉛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란: 벤처투자목적회사의 벤처기업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일 현재의 자산총액(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과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6. "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7. 출자는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또는 해당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국제금융기구의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게 지급되는 경우]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 법인명	
	② 납세자번호	
	③ 주소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국제금융기구의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뒤쪽)

소득지급자	④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⑤ 대표자(성명)			
	⑥ 납세자번호		⑦ 전화번호	
	⑧ 주소 또는 소재지			
대리인	⑨ 대리인유형	⑩ 성명 또는 법인명	⑪ 납세자번호	
	[] 납세관리인 [] 그 밖의 대리인			
	⑫ 주소 또는 소재지			
	⑬ 납세지 관할 세무서		⑭ 전화번호	

년 월 일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이 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국제금융기구 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 소득지급자등은 이 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① 법인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② 납세자번호란, ⑧ 납세자번호란 및 ⑬ 납세자번호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 번호를 적되,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 ③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 ④ 법인명(상호)란: 소득지급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합니다.
- ⑤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⑧ 주소 또는 소재지란: 소득지급자등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 ⑨ 대리인유형란부터 ⑭ 전화번호란까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capital gains Organization
 other income

[For use in the case of income pursuant to Article 21(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being paid to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without going through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Check the appropriate blank [].

Income Recipient (Investor)	① Name of Corporate Entity	
	② Taxpayer ID No.	
	③ Address	

I hereby submit the application for corporate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6)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nd Article 18(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Income Recipient (Investor)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capital gains and other income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Year Month Day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Official Seal

Income Payer	④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Korean)	(English)	
	⑤ 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⑥ Taxpayer ID No.		⑦ Phone No.	
	⑧ Address or Location			
Attorney-in-fact	⑨ Type of Attorney-in-fact	⑩ 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Entity		⑪ Taxpayer ID No.
	[] Tax Agent [] Other			
	⑫ Address or Location			
	⑬ Competent Tax Office		⑭ Phone No.	

Year Month Day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Filing Instructions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to apply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capital gains or other income pursuant to Article 21(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or to amend the application after tax exemption has been granted. Therefore,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is not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2. The income payer, etc. must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3. For “① 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name of the income recipient in English.
4. For “② Taxpayer ID No., ⑧ Taxpayer ID No., ⑬ 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or the Taxpayer ID No. of the country of residence in the absence of the relevant number.
5. For “③ 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name, city, state, country and postal code.
6. For “④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etc.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etc. is an individual.
7. For “⑤ 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8. For “⑧ Address or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 etc.’s head office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9. Fill in “⑨ Type of Attorney-in-fact” ~ “⑭ Phone No.”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소득지급자	⑪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⑫ 대표자(성명)			
	⑬ 납세자번호		⑭ 전화번호	
	⑮ 주소 또는 소재지			
대리인	⑯ 대리인유형	⑰ 성명 또는 법인명	⑱ 납세자번호	
	[] 납세관리인 [] 그 밖의 대리인			
	⑲ 주소 또는 소재지			
	⑳ 납세지 관할 세무서		㉑ 전화번호	

년 월 일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이 신청서는 대한민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의 비과세 신청서를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국제금융기구 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 소득지급자는 이 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① 법인명(상호)”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② 납세자번호”란·“⑥ 납세자번호”란·“⑬ 납세자번호”란·“⑱ 납세자번호”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되,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 “③ 주소”란·“⑧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 “⑨ 거주지국”란 및 “⑩ 거주지국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⑪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합니다.
- “⑫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⑮ 주소 또는 소재지”란: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 “⑯ 대리인유형”란부터 “㉑ 전화번호”란까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nterest incom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dividend income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capital gains
 other income

[For use in the case of income pursuant to Article 21(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being paid to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through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Check the appropriate blank [].

Income Recipient (Investor)	① Name of Corporate Entity		
	② Taxpayer ID No.		
	③ Address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④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⑤ 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⑥ Taxpayer ID No.	⑦ Date Approved	
	⑧ Address		
	⑨ Country of Residence	⑩ Resident Country Code	

I hereby submit the application for corporate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6)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nd Article 18(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capital gains and other income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Year Month Day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Income Payer	⑪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Korean)	(English)	
	⑫ 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⑬ Taxpayer ID No.		⑭ Phone No.	
	⑮ Address or Location			
Attorney-in-fact	⑯ Type of Attorney-in-fact	⑰ 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Entity		⑱ Taxpayer ID No.
	[] Tax Agent [] Other			
	⑲ Address or Location			
	⑳ Competent Tax Office		㉑ Phone No.	

Year Month Day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Filing Instructions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entities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as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QFI") to submit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pursuant to Article 21(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on behalf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Therefore,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is not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2. The income payer must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3. For ① 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full name of QFI in English.
4. For "② Taxpayer ID No., ⑥ Taxpayer ID No., ⑬ Taxpayer ID No. and ⑱ 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 A. If the person i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or the Taxpayer ID No. of the country of residence in the absence of the relevant number
 - 2) Overseas Korean who has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passport number and birth date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5. For "③ Address and ⑧ 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name, city, state, country and postal code.
6. For "⑨ Country of Residence" and "⑩ Resident Country Code".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untry Codes.
7. For "⑪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is an individual.
8. For "⑫ 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9. For "⑮ Address or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s head office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10. Fill in ⑯~㉑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국제금융기구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명칭(성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input type="checkbox"/> 소득자(투자자) <input type="checkbox"/> 소득지급자 <input type="checkbox"/>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재지(주소)	
	⑨ 생년월일	⑩전화번호
소득자 (투자자)	⑪ 법인명(성명)	
	⑫ 납세자번호	
	⑬ 소재지	
소득 지급자	⑭ 법인명(성명)	⑮ 납세자번호
	⑯ 관할 세무서	⑰ 전화번호
	⑱ 소재지	
청구내용	⑲ 청구세액(원)	⑳ 소득종류
	㉑ 청구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비과세 신청서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적격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2.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_____)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 ⑩+⑬)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⑥ 영상콘텐츠 구분 (㉠, ㉡, ㉢)	⑦ 영상콘텐츠 명칭	⑧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	⑨ 세액공제 대상여부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⑪ 국가 보조금 등	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	⑬ 세액공제 대상금액 (⑩-⑪-⑫)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계							

나. 기본공제금액 (=⑮)

기업 구분	⑭ '25.12.31 이전 발생분	⑮ 공제율	⑯ '25.12.31 이전 기본공제금액 (= ⑭×⑮)	⑰ '26.1.1 이후 발생분	⑱ 공제율	⑲ '26.1.1 이후 기본공제금액 (= ⑰×⑱)	⑳ 기본공제금액 (= ⑯+⑲)
중소기업		15%			15%		
중견기업		10%			10%		
일반기업		5%			10%		

다. 추가공제금액 (=㉑)

기업 구분	㉑ 세액공제 대상금액	㉒ 공제율	㉓ 추가공제금액 (= ㉑×㉒)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일반기업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㉔ 영상콘텐츠 구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㉕ 방송, ㉖ 영화, ㉗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
2. "㉘ 영상콘텐츠 명칭"란: 해당 영상콘텐츠의 명칭을 적습니다.
3. "㉙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란: 해당 영상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
4. "㉚ 세액공제 대상여부"란: 해당 영상콘텐츠가 최초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되는 경우 "여"에 표시하며, ㉕ 방송 또는 ㉖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표시합니다.
 - 1)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2)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5. "㉛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 1) 광고 및 홍보비용, 기업업무추진비
 -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 총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
 - 3)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위 1), 2)의 금액은 제외합니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6. "㉜ 국가 보조금 등"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7. "㉝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4항제1호나목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경우 ㉛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같은 조 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제외합니다)이 있으면 적습니다.
8. ㉞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기본공제 대상금액 합계(㉜+㉝)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9. "㉟ 세액공제 대상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26. 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㉞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4항제1호의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4항제2호의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8항에 따른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 나. 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9항에 따른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0항에 따른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1항에 따른 후반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 4)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그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신성장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인정 신청 여부	여[] 부[]	미신청 투자금액 합계	
④ 신성장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인정 신청 인정 여부	여[] 부[]	미인정 투자금액 합계	
⑤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여[], 부[]		
⑥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②① + ②⑥)			

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 (=①⑦)

⑦ 투자종류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또는 해당기술 사용 제품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 연구 개발에 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	⑨ 총 투자예정금액	⑩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⑪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⑫ 총 투자예정비	⑬ 진행률 (⑪/⑫)	⑭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⑨×⑬)	⑮ 누적투자대상금액 (⑩와⑭ 중 큰 금액)	⑯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대상금액	⑰ 투자금액 (⑮ - ⑯)
				⑪ 해당 과세연도말 총 투자누적액	⑫ 총 투자예정비	⑬ 진행률 (⑪/⑫)	⑭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⑨×⑬)						
계													

나. 그 외 투자금액 (=①⑧)

투자종류	⑧ 투자금액
일반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⑧이 '미사용'인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⑧이 '미사용'인 시설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⑧이 '미사용'인 시설
계	

다. 기본공제금액 (=②①)

투자종류	⑱ 공제대상 투자금액 (=①⑦+①⑧)	⑳ 공제율	㉑ 기본공제금액 (=⑱×⑳)
일반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1%, 5%, 7.5%, 10% (1%, 7%, 12%)	
	⑧이 "미사용"인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3%, 6%, 9%, 12% (3%, 8%, 14%)	
	⑧이 "미사용"인 시설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15%, 15%, 20%, 25%	
	⑧이 "미사용"인 시설		
합계			

라. 추가공제금액 (=㉔)

투자종류	㉒ 공제대상 투자금액 (=㉑)	㉓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㉔ 초과액 (=㉒-㉓)	㉕ 공제율	㉔ 추가공제금액 Min[(㉔×㉕), (㉑×2)]
일반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10%	
	⑧이 "미사용"인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⑧이 "미사용"인 시설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⑧이 "미사용"인 시설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 1.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중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㉕ 임시 투자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적습니다.
- "㉗ 투자종류"란: 일반시설 투자금액, 신성장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 및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며,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은 반도체분야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을 말합니다.
- "㉘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또는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란: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이거나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이거나 해당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사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을 적습니다.
- "㉚ 진행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 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 "㉛ 누적투자 대상금액"란: ㉚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㉚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㉛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㉜ 공제대상 투자금액"란: ㉛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과 ㉛ 그 외 투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㉝ 공제율"란: 일반시설란 및 신성장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란의 괄호 안의 공제율은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을 말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에는 일반시설은 7.5%, 신성장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은 9%,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은 20%,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은 25%의 공제율을 적습니다.
- "㉞ 공제대상 투자금액"란: ㉜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㉟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 ÷ 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12)]로 계산하며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㉔ 추가공제금액의 합계는 ㉔ 초과액의 합계에 공제율(10%)를 곱한 값과 일치해야 하며, ㉔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별지 제8호의9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㉔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또는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에 '사용'이라고 적은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작성합니다. 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합니다.
2.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생산실적을 작성합니다.

투자시설			투자종류		생산량					
연번	시설명	투자금액	종류	기술 연번	측정 대상	측정기간	총 생산량	국가전략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1	0000	0000	국가전략기술	1.반도체 가.	웨이퍼	2022.4.1. ~ 2025.12.31.	000개	000개	000개	000개
2	0000	0000	국가전략기술	1.반도체 나.	웨이퍼	2022.7.1. ~ 2025.12.31.	00개	00개	00개	00개

3. "㉔ 종류"란: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하는 시설을 적습니다.
4. "㉕ 기술연번"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또는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참고하여 투자한 시설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습니다.
5. "㉖ 측정대상"란: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서 생산량의 측정 대상인 것을 적습니다.
6. "㉗ 측정기간"란: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2년 4월 1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7. "㉘ 총생산량"란, "㉙ 국가전략기술"란, "㉚ 신성장·원천기술"란 및 "㉛ 일반기술"란: 각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을 적습니다. 측정대상이 고체류인 경우는 개수로, 액체류 또는 기체류인 경우는 부피 측정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가 담긴 용기의 개수의 측정단위로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별지 제8호의9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⑩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또는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에 '사용'이라고 적은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해 작성합니다. 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합니다.
-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사용시간을 작성합니다.

투자시설			투자종류		사용시간				
연번	시설명	투자금액	종류	기술 연번	측정기간	총 사용시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1	0000	0000	국가전략기술	1.반도체가.	2025.7.1. ~ 2028.12.31.	000시간	000시간	000시간	000시간
2	0000	0000	국가전략기술	1.반도체나.	2025.7.1. ~ 2028.12.31.	00시간	00시간	00시간	00시간

- "⑫ 종류"란: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하는 시설을 적습니다.
- "⑬ 기술연번"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또는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참고하여 투자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연구개발 대상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습니다.
- "⑭ 측정기간"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5년 7월 1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 "⑮ 총 사용시간"란: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총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을 적습니다.
- "⑯ 국가전략기술"란: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적습니다.
- "⑰ 신성장·원천기술"란: 해당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동시에 사용한 시간은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으로 봅니다.
- "⑱ 일반기술 등"란: 총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을 적습니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제출기업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div>	
	⑥ 과세연도 <div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div>	

⑦ 투자시설			⑪ 투자종류	⑬ 서비스 제공시간			
⑧ 연번	⑨ 시설명	⑩ 투자금액	⑫ 기술연번	⑭ 측정기간	⑮ 총 서비스 제공시간 (⑮+⑰)	⑯ 국가 전략기술	⑰ 국가전략 기술 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7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서비스 제공시간 실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별지 제8호의9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생산 또는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에 '사용'이라고 적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작성합니다. 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합니다.
2.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을 작성합니다.

투자시설			투자종류	서비스 제공시간			
연번	시설명	투자금액	기술 연번	측정기간	총 서비스 제공시간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외
1	0000	0000	8.인공지능	2025.12.1. ~ 2028.12.31.	000시간	000시간	000시간
2	0000	0000	8.인공지능	2025.12.1. ~ 2028.12.31.	00시간	00시간	00시간

3. "⑩ 기술연번"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참고하여 투자한 국가전략 기술사업화시설의 서비스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습니다.
4. "⑪ 측정기간"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5년 12월 1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5. "⑫ 총 서비스 제공시간"란: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 제공시간을 적습니다.
6. "⑬ 국가전략기술"란: 해당 시설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적습니다.
7. "⑭ 국가전략기술 외"란: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 제공시간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적습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⑥ 웹툰콘텐츠 구분 (㉠, ㉡)	⑦ 웹툰콘텐츠 명칭	⑧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	⑨ 세액공제 대상여부	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⑪ 국가 보조금 등	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	⑬ 세액공제 대상금액 (⑩-⑪-⑫)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계							

나. 공제금액 (=㉢)

기업 구분	⑰ '26.1.1 이후 발생분	⑱ 공제율	⑲ 공제금액 (= ⑰ × ⑱)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일반기업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㉔ 웹툰콘텐츠 구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㉕ 디지털만화, ㉖ 웹툰"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
2. "㉗ 웹툰콘텐츠 명칭"란: 해당 웹툰콘텐츠의 명칭을 적습니다.
3. "㉘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란: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
4. "㉙ 세액공제 대상여부"란: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여"에 표시하며,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표시합니다.
 - 1)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2)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5. "㉚ 웹툰콘텐츠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10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 1) 광고 및 홍보비용, 기업업무추진비
 -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
6. "㉛ 국가 보조금 등"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7. "㉜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1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경우 ㉚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으면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앞쪽)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_____)

2 과세연도 _____ 년 월 일부터 _____ 년 월 일까지

3 세액공제액 계산내용

가. 세제지원 요건 : ⑦ > ⑩ 또는 ⑭ > ⑮ 이고, ⑧ ≥ ⑨이어야 함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⑥/⑦)	⑥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⑦ 과세연도 개월 수
⑧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⑩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⑪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⑫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⑬이 양수이면서 ⑭의 30%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⑬/⑭)	⑬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⑭ 상시근로자 수(=⑧~⑫)
⑬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⑭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⑮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⑯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⑰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⑱이 양수이면서 ⑲의 30%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⑲/⑳)	⑱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⑲ 상시근로자 수
⑲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㉑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㉒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㉓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㉔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4. 평균임금 증가율(일반적인 경우: ㉕이 양수이면서 ㉖의 30% 이상인 경우)

㉕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㉒-⑬)/⑬]	
㉖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㉑-⑭)/⑭]	
㉗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㉒-⑮)/⑮]	
㉘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㉓-⑯)/⑯]	

5.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일반적인 경우: ㉙이 양수이면서 ㉚의 30% 이상인 경우) [㉚=(㉕+㉖+㉗)/3]

6.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㉛={⑬-⑭×(1+㉚)}×⑨]

7. ㉙이 음수이거나, ㉙이 양수이지만 ㉚의 30% 미만인 경우 ⑮, ㉗, ㉘, ㉙의 계산 특례

㉛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⑮+⑮)/2]	
㉜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㉛-⑮)/⑮]	
㉝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㉕+㉖)/2]	
㉞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㉛-⑮×(1+㉝))×⑨]	

나. 세제지원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㉗ > 3.2%이며, ㉛ ≥ ㉜ 이고, ㉙ ≥ 0 인 경우에 적용됨

㉞ 중소기업 계산특례 [=(⑮-⑮×(1+3.2%))×⑨]

4 세액공제액 [(㉞ 또는 ㉞) × 세액공제율(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㉞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㉞ ×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_____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㉔란부터 ㉖란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 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 제공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3. ㉓란 및 ㉖란의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를 계산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4. ㉑란부터 ㉓란까지, ㉕란부터 ㉗란까지 및 ㉙란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㉗란부터 ㉑란까지 및 ㉓란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6. ㉑란 및 ㉓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㉒란 또는 ㉔란의 값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7.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8.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9.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㉑란 또는 ㉓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③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방법 2,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직전전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⑥ 상시근로자 수 (⑦+⑧)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⑧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⑨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⑩ 육아휴직 복귀자 수	-		

④ 기본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⑬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⑫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⑬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⑪-⑫)

2.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⑭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⑮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⑯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⑭-⑮)

3.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⑰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⑱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⑲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⑰-⑱)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	1인당 공제금액	㉒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1천4백5십만원	
		청년등 외	8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1천5백5십만원	
		청년등 외	9백5십만원	
계				
중견 기업	청년등		8백만원	
	청년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등		4백만원	
	청년등 외			
	계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㉓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㉑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㉒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㉓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㉑-㉒)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㉔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㉕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㉖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㉗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㉗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㉘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㉙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㉗-㉘)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㉚ 1차년도 (직전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㉛ 1차년도 (직전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㉜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⑤ 추가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세제지원 요건 : ㉔ ≥ 0

㉓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㉕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㉓-㉔)

나.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인원 수	1인당 공제금액	㉖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1천3백만원	
	계			
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9백만원	
	계			

㉖ 세액공제액 : ㉗ 1차년도 세액공제액 + ㉘ 2차년도 세액공제액 + ㉙ 3차년도 세액공제액 + ㉚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전 과세연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가.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의 합
 - 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의 합
 - 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의 합
- ㉖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와 그 배우자
 -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 ㉗란 등의 청년등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및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경우로서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또는 3년(2025년 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또는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
 -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 ㉗, ㉘, ㉙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 ㉓, ㉔란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의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신청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4쪽 중 제1쪽)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2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3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방법 2,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전전 과세연도	전전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⑥ 상시근로자 수(⑦+⑧)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⑧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⑨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⑩ 육아휴직 복귀자 수	-			

4 기본공제 계산내용

가.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구분	⑪ 1인당 공제금액	⑫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⑬ 산출한금액 (⑪×⑫)
중소기업	수도권 내	700만원	
	수도권 밖	1,0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일반기업	300만원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구분	⑭ 1인당 공제금액	⑮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⑯ 산출한금액 (⑭×⑮)
중소기업	수도권 내	1,600만원	
	수도권 밖	1,9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일반기업	500만원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구분	⑰ 1인당 공제금액	⑱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⑲ 산출한금액 (⑰×⑱)
중소기업	수도권 내	1,700만원	
	수도권 밖	2,0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일반기업	-	-	-

4. 합계

구분		⑳ 산출한금액 합계 (⑬+⑯+⑰)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중견기업		
일반기업		

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구분		㉑ 1인당 공제금액	㉒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㉓ 산출한금액 (㉑×㉒)
중소기업	수도권 내	400만원		
	수도권 밖	700만원		
중견기업		300만원		
일반기업		-	-	-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구분		㉔ 1인당 공제금액	㉕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㉖ 산출한금액 (㉔×㉕)
중소기업	수도권 내	900만원		
	수도권 밖	1,2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일반기업		-	-	-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구분		㉗ 1인당 공제금액	㉘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㉙ 산출한금액 (㉗×㉘)
중소기업	수도권 내	1,000만원		
	수도권 밖	1,3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일반기업		-	-	-

4. 합계

구분				㉚ 산출한금액 합계 (㉓+㉖+㉙)
중소기업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중견기업				
일반기업				-

다.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금액(중견기업 5명, 일반기업 10명)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구분	㉛ 1인당금액	㉜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㉝ 산출한금액 (㉛×㉜)
중견기업	300만원		
일반기업	-	-	-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구분	㉞ 1인당금액	㉟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㊱ 산출한금액 (㉞×㉟)
중견기업	500만원		
일반기업	-	-	-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구분	㊲ 1인당금액	㊳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㊴ 산출한금액 (㊲×㊳)
중견기업	500만원		
일반기업	-	-	-

4) 합계

구분			㊵ 산출한금액 합계 (㉝+㊱+㊴)
중견기업	-		
일반기업			
일반기업			-

다.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금액(중견기업 5명, 일반기업 10명)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구분	㉔ 1인당금액	㉑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㉒ 1인당금액	㉓ 최소 고용증가 인원수	㉔ 산출한금액 $(\text{㉔} \times \text{㉑}) + \{\text{㉒} \times (\text{㉓} - \text{㉑})\}$
중견기업	300만원		500만원		
일반기업	-		300만원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구분	㉕ 1인당금액	㉑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㉒ 1인당금액	㉓ 최소 고용증가 인원수	㉔ 산출한금액 $(\text{㉕} \times \text{㉑}) + \{\text{㉒} \times (\text{㉓} - \text{㉑})\}$
중견기업	500만원		900만원		
일반기업	-		500만원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구분	㉖ 1인당금액	㉑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㉒ 1인당금액	㉓ 최소 고용증가 인원수	㉔ 산출한금액 $(\text{㉖} \times \text{㉑}) + \{\text{㉒} \times (\text{㉓} - \text{㉑})\}$
중견기업	500만원		900만원		
일반기업	-	-	-	-	-

4) 합계

구분					㉕ 산출한금액 합계 $(\text{㉔} + \text{㉑} + \text{㉒})$
중견기업	-				
일반기업	-				
㉖ 기본공제 세액공제액 $\{ \text{㉒} + \text{㉓} - (\text{㉑} \text{ 또는 } \text{㉕}) \}$					

5 추가공제 계산내용

가. 세제지원 요건 : ㉖ ≥ 0

㉖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㉗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text{㉖} - \text{㉗})$

나.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인원 수	1인당 공제금액	㉙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1천3백만원	
	계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9백만원	
	계			

㉚ 세액공제액 : ㉖ 기본공제 세액공제액 + ㉙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가.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의 합
 - 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의 합
 - 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의 합
2. ⑥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나. 「근로기준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와 그 배우자
 -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3. ⑦란 등의 청년등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및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경우로서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또는 3년(2025년 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또는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
 -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5. ⑩란의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6. ⑥란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7. ⑧란의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8. ⑫란의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9. ⑮란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10. ⑰란의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11. ⑫, ⑮, ⑰, ⑱, ㉑, ㉓ 증가 인원수 계산시 직전 과세연도, 전전 과세연도, 전전전 과세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⑫, ⑮, ⑰, ⑱, ㉑, ㉓ 증가 인원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합니다.
13. ⑬, ⑯, ⑲, ㉒, ㉔, ㉕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금액은 0으로 봅니다.
14. ⑳, ㉖란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과세연도 ~ 법인종류별 구분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분	①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근무 개월 수의 합계	② 과세연도 과세연도 개월수	③ 상시 근로자수 (=① ÷ ②)	④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근무 개월 수의 합계						⑩ 합계	⑪ 과세연도 과세연도 개월수	⑫ 청년등 상시 근로자수 (=⑩ ÷ ⑪)	⑬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수 (=③-⑫)
				⑤ 청년	⑥ 장애인	⑦ 고령자	⑧ 경력 단절 근로자	⑨ 북한 이탈 주민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별 명세

⑭ 생년월일 (YYYYMMDD)	⑮ 성명	⑯ 상시근로자 (N/Y)	⑰ 상시근로자 제외사유	⑱ 단시간 근로자 유형 (0.5/0.75)	⑲ 내국인 (N/Y)	⑳ 수도권 근무지 (N/Y)	㉑ 근로계약 체결일 (YYYYMMDD)	㉒ 근로기간 (MM~MM)	㉓ 상시근로자 근무 개월수	㉔ 청년등 상시근로자 근무 개월수	청년			㉘ 장애인 (N/Y)	㉙ 고령자 (N/Y)	㉚ 경력 단절 근로자 (N/Y)	㉛ 북한 이탈 주민 (N/Y)	㉜ 정규직 전환자 (N/Y)	㉝ 육아 휴직 복귀자 (N/Y)
											㉕ 과세연도 기준 청년여부 (N/Y)	㉖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 (N/Y)	㉗ 청년 제외시점 (YYYYMMDD)						

3.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별 명세

㉔ 생년월일 (YYYYMMDD)	㉕ 성명	㉖ 상시근로자 (N/Y)	㉗ 상시근로자 제외사유	㉘ 단시간근로자 유형 (0.5/0.75)	㉙ 내국인 (N/Y)	㉚ 수도권근로자 (N/Y)	㉛ 근로계약 체결일 (YYYYMMDD)	㉜ 근로기간 (MM~MM)	㉝ 상시근로자 근무 개월수	㉞ 청년 등 상시근로자 근무 개월수	청년			㉟ 장애인 (N/Y)	㊱ 고령자 (N/Y)	㊲ 경력 단절 근로자 (N/Y)	㊳ 북한 이탈 주민 (N/Y)	㊴ 정규직 전환자 (N/Y)	㊵ 육아 휴직 복귀자 (N/Y)	
											㉠ 과세연도 기준 청년여부 (N/Y)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 (N/Y)	㉢ 청년 제외시점 (YYYYMMDD)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㉗ 상시근로자 제외 사유"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적습니다.
 - "㉖ 상시근로자"란에서 'N'을 선택한 경우 제외 사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를 적습니다.(㉠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법인의 임원, ㉣최대주주(출자자) 및 그 친족, ㉤원천징수사실 미확인 근로자 등, ㉥기타)
- "㉘ 단시간근로자유형"란: 단시간근로자 중 ㉙상시근로자가 'Y'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전 과세연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0.5
 - 나. 가목의 단시간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0.75
 * 단시간근로자: 1주동안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㉙ 내국인"란: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국적 무관)
- "㉚ 수도권근로자"란: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인 경우 Y로, 그 외의 경우 N으로 적습니다.
- "㉛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6항에 따른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무개월수(단시간근로자 유형의 경우 0.5(0.75)×근무개월수)를 적습니다.
- "㉞ 청년 등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6항에 따른 해당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근무개월수를 적습니다.
- "㉠ 과세연도 기준 청년여부"란: 해당 연도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공필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란: ㉛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공필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청년 제외시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3항에 따라 청년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초로 청년에서 제외되는 일자를 적습니다.
 - 예시1) 생일이 1990년 5월 28일인 직원(군미필)은 2025년 5월 27일까지 청년이고 2025년 5월 28일부터는 청년이 아니므로 해당 칸에는 '20250528'을 적습니다.
 - 예시2) 생일이 1990년 5월 28일인 직원(군미필)의 근로계약 체결일이 2025년 5월 1일인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해당 칸에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2년이 지난 20280501 또는 20270501을 적습니다.
- "㉟ 장애인"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㊱ 고령자"란: ㉛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㊲ 경력 단절 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 결혼·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㊳ 북한이탈주민"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
- "㊴ 육아휴직 복귀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5항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 "㊵ 2024년 이전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출자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본점소재지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외국자회사 주식등	⑥ 외국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대표자 성명		⑨ 생년월일				
	⑩ 본점소재지						
	⑪ 출자 시기		⑫ 출자 주식수				
	⑬ 일련번호	⑭ 취득시기	⑮ 주식수	⑯ 취득가액			
	계						
피출자법인	⑰ 외국법인명		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대표자 성명		⑳ 생년월일				
	㉑ 본점소재지						
	㉒ 취득 주식수		㉓ 주식가액				
㉔ 주식과세이연금액 (㉓ 주식가액 - ⑯ 취득가액 합 계란의 금액)							
손 금 산 입		익 금 산 입(계획)					
과세연도	⑳ 산입액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㉗연도	㉘금액	㉙연도	㉚금액	㉛연도	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제4항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1."출자법인"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을 적습니다.
- 2."외국자회사 주식등"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적습니다.
- 3."피출자법인"란: 출자법인 및 출자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는 외국법인을 적습니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2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및 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회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12항	특정사채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8항	개인연금저축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8항	연금저축		()사망 ()천재·지변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9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 ()천재·지변 ()해외이주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발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7항	장기주택마련저축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7항	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	<p>()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p>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2항	주택 청약종합저축	<p>()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p>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제5항	공모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p>()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p>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제10항	세금우대종합저축	<p>()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p>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제5항	재형저축	<p>()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p>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8항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p>()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p>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 제9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p>()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p>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5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p>()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신탁업자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p>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3조의6제13항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제9항	청년희망적금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	청년도약계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의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제5항	청년미래적금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12항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등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폐업: 폐업증명원 6. 상해·질병: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 상해·질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의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

소득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	----------	------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 소득금액	근로소득 유·무		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 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제4항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1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입한 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미래적금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의사항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적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 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고,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소득확인증명서(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신청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

소득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	----------	------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 소득금액	근로소득 유·무		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 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2항제1호, 제89조의3제2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입한 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그 통보된 출자금·예탁금에서 출자·가입 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의 사항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적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산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 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고,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앞쪽)

신청인 (출자자 또는 출자법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피출자 법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⑥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대표자 성명	⑨ 생년월일			
	⑩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납부이연 또는 과세이연 금액	⑪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⑫ (거주자) 양도소득 산출세액			
	⑬ (내국법인) 양도차익 상당액				

현물출자 명세

⑬ 자 산 명	⑭ 소 재 지	⑮ 면 적(m ²)	⑯ 취득일	⑰ 취득가액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계				
⑱ 현물출자일	⑲ 양도가액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⑳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⑲-⑰)	
계			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신청내용"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거주자의 경우: “㉒ (거주자)양도소득 산출세액”란에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내국법인의 경우: “㉓ (내국법인)양도차익 상당액”란에 “㉑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계”란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관서	() 세무서	최종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재창업 또는 취업 여부	2020. 1. 1. ~ 2028. 12. 31.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하고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2026. 1. 1.부터	
	상호		근무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취업일	
			고용보험 연속 납입기간	20 년 월 ~ 현재 (개월)

3.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명세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계	내국세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1							
2							
3							
4							
5							
계							

4.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기간 : 승인일로부터 ()개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지연 가산세(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를 승인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매출전표, 도급계약서 등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3.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내역(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료 납입 계좌증빙 등 4. 징수곤란 체납액을 증명하는 서류 - 압류된 재산 및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등 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3.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명세"란: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세목"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납부번호"란: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5.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관서	() 세무서
최종 폐업일자	년 월 일

3. 소멸특례 신청 체납액(강제징수비 포함) 명세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 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계	내국세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1							
2							
3							
4							
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소멸대상 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이 대리신청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대리신청 동의서

본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3. 소멸특례 신청 체납액"란: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세목"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납부번호"란: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5. 소멸특례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그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입니다.
6.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결과 통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 소멸이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 소멸 승인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납부의무 소멸 신청일		년 월 일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 명세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합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우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주소	접수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이전 전 해외 사업장	⑥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소재지		
	⑦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업종·업태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폐쇄(예정)일 또는 축소완료일		
	⑨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⑩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이전 후 국내 사업장	⑪ 이전·복귀 후 사업장의 소재지		
	⑫ 이전·복귀 후 사업장의 업종·업태		
	⑬ 이전·복귀 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감면세액 계산내용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⑭ 이전·복귀 후 창업·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		
	⑯ 이전·복귀 후 창업·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매출액		
	⑰ 감면대상소득	⑭ × (⑮ ÷ ⑯)	
	⑱ 감면비율	100% (50%)	⑲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3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사업자등록증, 세금 납부명세 등) 2.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국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 축소완료 확인서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또는 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 축소 확인서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5.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확인한 유희면적 현장조사 신청서(확인서)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폐쇄(예정)일 또는 축소완료일란은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양도·폐쇄일·축소완료일을 기재하며, 아직 양도·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일을 기재합니다.(예정일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⑨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국외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시 부여받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시: CNPJ, EIN, IEC, TAX CODE, TAX ID, TAX NO, TRN, OC, USCI, VAT NO, VRN 등)
3.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된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을 기재합니다.
4. ⑰ 감면대상소득란은 ⑭ 이전·복귀 후 창업·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에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을 ⑯ 이전·복귀 후 창업·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소득을 기재하며, 계산된 소득은 ⑭ 이전·복귀 후 창업·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 합니다.

작성방법

□ 납세의무자란

- ① 성명: 개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주소(거소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합계란

- ⑥ 배당금액: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분리과세 신청하는 배당금 합계액(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란

- ⑦ 법인명: 고배당기업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⑧ 배당성향: 고배당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을 적습니다.
- ⑨ 이익배당금 증가율: 고배당기업의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 증가비율을 적습니다.

□ 분리과세 신청하는 배당 정보란

- ⑩ 배당금 수령일: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수령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⑪ 수령한 배당금액(세전):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원천징수 전 금액)을 적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처리기간	즉시
--	------	----

1. 신고자 인적사항

① 성명(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태	④ 종목

2. 재활용폐자원 매입 합계

구분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⑤ 합계				
⑥ 영수증 수취분				
⑦ 계산서 수취분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당기 과세표준(매출액)			당기 매입액			대상액 한도계산		
⑧ 합계	⑨ 예정분	⑩ 확정분	⑪ 합계	⑫ 세금계산서	⑬ 영수증 등	⑭ 한도율	⑮ 한도액	⑯ 공제가능한 금액 (=⑮-⑫)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⑰ 공제대상금액 (=⑬과 ⑯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⑳ 공제 (납부)할 세액 (=⑰-㉑)
	⑱ 공제율	㉒ 공제대상 세액	㉓ 합계	㉔ 예정 신고분	㉕ 월별 조기분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일련 번호	㉖ 공급자		㉗ 건수	㉘ 품명	㉙ 수량	㉚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 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2. "⑤ 합계"란: "⑥ 영수증 수취분"란과 "⑦ 계산서 수취분"란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3. "⑥ 영수증 수취분"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4. "⑦ 계산서 수취분"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5. "매입세액 공제액"란: 취득금액의 3/103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6.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⑧합계"란부터 "㉓공제(납부)할 세액"란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7. "⑧ 합계"란: 당기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 과세표준(매출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⑨ 예정분"란: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9. "㉑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을 적습니다.
10. "㉒ 영수증 등"란: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란과 "⑦ 계산서 수취분"란의 취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㉔ 한도율"란: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12. "㉕ 한도액"란: 당기 과세표준(매출액) 합계(⑧)에 한도율(㉔)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㉖ 공제가능한 금액"란: "㉕ 한도액"란에서 "㉑ 세금계산서"란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㉗ 공제대상세액"란: "㉑ 공제대상금액"란에 "㉒ 공제율"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㉘ 합계"란: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6. "㉓ 공제(납부)할 세액"란: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6쪽 중 제4쪽 (47)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17.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㉔ 공급자"란부터 "㉓ 취득금액"란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으며,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1.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2. "⑤ 합계"란: "⑥ 영수증 수취분"란과 "⑦ 계산서 수취분"란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3. "⑥ 영수증 수취분"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4. "⑦ 계산서 수취분"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5. "매입세액 공제액"란: 취득금액의 10/11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중고자동차 중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가.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다른 그 밖의 관계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다만,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 "3.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⑧ 합계"란부터 "⑩ 차기이월세액"란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8. "⑧ 합계"란: 당기 과세기간의 중고자동차 과세표준(매출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⑨ 예정분"란: 월별 조기환급, 예정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⑫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고자동차 매입액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⑬ 영수증 등"란: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란과 "⑦ 계산서 수취분"란의 취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⑭ 공제가능한 금액"란: "⑧당기 과세표준(매출액) 합계"란에서 "⑫세금계산서"란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3. "⑮ 공제율"란: 110분의 10을 적습니다.
14. "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란: "⑭ 공제가능한 금액"란에 "⑮ 공제율"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이월세액"란("⑰ 직전전기"란부터 "⑲ 합계"란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⑰ 직전전기"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⑰ 직전전기"란의 금액을 적고, "⑱ 직전전기"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⑱ 당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 합계"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⑳ 차기이월세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결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 제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결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적습니다.
16. "㉑ 영수증 등 매입세액"란: "⑬ 영수증 등 매입액"란에 "⑯ 공제율"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㉒ 공제대상세액"란: "⑲ 이월세액 합계"란과 "㉑ 영수증 등 매입세액"란을 합한 금액과 "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란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8. "㉓ 합계"란: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9. "㉔ 공제(납부)할 세액"란: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6쪽 중 제4쪽 (47)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20. "공제 잔액"란("㉕ 직전전기"란부터 "㉗ 합계"란까지): 먼저 "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에서 "⑰ 직전전기 이월세액"."⑱ 직전전기 이월세액"."㉑ 영수증 등 매입세액"을 순서대로 공제하고, "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공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공제 순서: ⑰직전전기 > ⑱직전전기 > ㉑영수증 등 매입세액)
21. "㉘ 합계"란: "⑲ 이월세액 합계"란과 "㉑ 영수증 등 매입세액"란을 합한 금액에서 "⑯ 공제가능한 한도세액"을 차감한 금액(음수인 경우 "0")과 일치해야 합니다.
22.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㉙ 공급자"란부터 "㉛ 취득금액"란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으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년 기)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 번호	공급자		건수	품명	수량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년 기)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 번호	공급자		건수	품명	수량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카드종류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			
		① 일반	② 문화체육	③ 전통시장	④ 대중교통	⑤ 일반	⑥ 문화체육	⑦ 전통시장	⑧ 대중교통	⑨ 일반 (①-⑤)	⑩ 문화체육 (②-⑥)	⑪ 전통시장 (③-⑦)	⑫ 대중교통 (④-⑧)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년 1월												
	년 2월												
	년 3월												
	년 4월												
	년 5월												
	년 6월												
	소 계 (1-6월)												
	년 7월												
	년 8월												
	년 9월												
	년 10월												
	년 11월												
	년 12월												
	소 계 (7-12월)												
	합 계 (연간)												
	직전연도 사용금액												

사용목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직인

작성방법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 전통 시장 사용분, 같은 항 제2호의 대중교통 이용분, 같은 항 제3호의 문화체육 사용분 해당금액은 그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영화관람료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사용금액"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2017.1.1. 이후 구입분)을 포함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금액(100%) - 공제제외(90%) = 공제대상금액(10%)]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5.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는 소득공제를 확대 기간별 사용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문화체육 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는 소득공제를 확대 기간별 사용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 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에 지급한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및 제2호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9.2.12. 이후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2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해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2017.1.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90퍼센트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거주자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부양자녀 인원	없음 []	1명 []	2명 이상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① 내·외국 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 구분	⑤ 소계 (⑥+⑦+⑧+⑨+⑩+⑪)	⑥ 신용 카드	⑦ 직불·선불 카드 등	⑧ 현금 영수증	⑨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⑩ 전통시장 사용분	⑪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계액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⑫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 × 15%)	⑬ 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⑦+⑧) × 30%	⑭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금액 (⑨ × 30%)	⑮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⑩ × 40%)	⑯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⑪ × 40%)	⑰ 공제제외금액 계산		
					⑰-1 총급여	⑰-2 최저 사용금액 [(⑰-1) × 25%]	⑰-3 공제 제외금액
⑱ 공제가능 금액 [(⑫+⑬+⑭+⑮+⑯) - (⑰-3) + ⑱]	⑲ 공제 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300만원, 250만원]	⑳ 일반 공제금액 (⑱과 ⑲ 중 적은 금액)	㉑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체육 추가공제액 계산			㉒ 추가공제금액 합계 {(⑱-⑲), +(⑳-3)+㉑} 중 적은 금액	㉓ 최종 공제금액 (㉒+㉓)
			㉑-1 추가공제 가능금액 [⑱ > ⑲인 경우 (⑭+⑮+⑯)과 (⑱-⑲) 중 적은 금액]	㉑-2 추가공제 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300만원, 200만원]	㉑-3 추가공제 금액 {(⑱-1)과 (㉑-2) 중 적은 금액}		

⑰-3 계산

구분	계산식	⑰-3
⑥ ≥ (⑰-2)	(⑰-2) × 15%	
⑥ + ⑦ + ⑧ + ⑨ ≥ (⑰-2) > ⑥	⑥ × 15% + {(⑰-2) - ⑥} × 30%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⑰-2) > ⑥ + ⑦ + ⑧ + ⑨	⑥ × 15% + (⑦+⑧+⑨ × 30%) + {(⑰-2) - ⑥ - ⑦ - ⑧ - ⑨} × 4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부양자녀 인원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직계비속(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하며,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인원을 말하며, 해당하는 란에 “○” 표를 기재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로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입니다.
4. "① 내·외국인 구분"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5. "② 관계"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6.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에는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에는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⑨란에서 차감하고 "⑪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 "⑥ 신용카드"란부터 "⑪ 대중교통이용분"란까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나. "⑥ 신용카드"란, "⑦ 직불·선불카드등"란, "⑨ 문화체육사용분"란, "⑩ 전통시장사용분"란 및 "⑪ 대중교통이용분"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⑩, ⑪, ⑫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다. "⑧ 현금영수증"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8. ⑧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9.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⑰-1 총급여"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을 말합니다)의 "⑳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⑱ 공제한도액"란: 총급여 및 부양자녀 인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공제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부양자녀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 포함

기본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부양자녀 없음	300만원	250만원
부양자녀 1인	350만원	275만원
부양자녀 2인 이상	400만원	300만원

12. 문화체육사용분과 문화체육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13. ㉒-2 공제한도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이며,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제외)	일반[], 연결[]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일반[], 연결[]		
2. 과세방식 선택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세대상 소득	⑤ 사업연도 소득			
	가산항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⑨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		
		⑩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⑪ 소계(⑥+⑦+⑧+⑨+⑩)		
	차감항목	⑫ 법인세액등		
		⑬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⑭ 법령상 의무적립금		
		⑮ 이월결손금 공제액		
		⑯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⑰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⑱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⑲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⑳ 공적자금 상환액		
		㉑ 소계(⑫+⑬+⑭+⑮+⑯+⑰+⑱+⑲+⑳)		
	㉒ 기업소득(⑤+⑪-㉑)			
	㉓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			
	㉔ 과세대상 소득(㉒×80%또는30%, ㉓×㉒/㉓×80%또는30%)			
	투자금액	유형자산	㉕ 기계 및 장치 등	
			㉖ 업무용 건물 건축비	
			㉗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㉘ 무형자산				
㉙ 소계(㉕+㉖+㉗+㉘)				
배당금	㉚ 현금배당			
	㉛ 자본준비금(또는 이익준비금) 감액배당			
	㉜ 소계(㉚-㉛)			
임금증가 금액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 금액 계산	㉝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㉞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㉟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㊱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㊲ 해당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평균액		
		㊳ 임금증가 계산금액 [(㉝-㉞) ≤ 0 인 경우 : (㉟-㊱), (㉝-㉞) > 0 인 경우 : {(㉟-㊱)-(㉝-㉞)×㊲}×1.5+(㉝-㉞)×㊲×2]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 금액 계산	㊴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㊵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㊶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㊷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㊸ 임금증가 계산금액[(㊴-㊵) > 0 인 경우만 (㊶-㊷)]				
㊹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 제외) 임금증가금액				
㊺ 소계(㊳+㊴+㊸)				
상생협력 지출금액	㊻ 상생협력출연금			
	㊼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㊽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			
	㊾ 무역보험기금 출연액(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위한 출연액으로 한정한다)			
	㊿ 상생협력 지출금액 계산[(㊻+㊼+㊽+㊾)×3]			

미 환류소득	⑤1 A방식(80% 적용)[24-(29+32+45+50)]	⑤3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⑤2 B방식(30% 적용)[24-(32+45+50)]		금액	
⑤4 초과환류액	A방식 B방식			

	직전전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⑤5 미환류소득			
⑤6 이월된 초과환류액			
⑤7 차기 환류적립금			
⑤8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⑤9 초과 환류액 (=⑤4)			
⑥0 과세대상미환류소득 (⑤5-⑤6-⑤7+⑤8-⑤9)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⑥0×20%) ⑥1

5. 이월결손금 계산서

⑥2 사업연도	⑥3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⑥4 기차감액	⑥5 당기 차감액	⑥6 보전	⑥7 계 (⑥3-⑥4-⑥5-⑥6)	⑥8 기한 내	⑥8 기한 경과
계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해당 법인이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 ④란에 표시합니다.
- ⑪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⑩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 ②4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8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30%를 ②2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기업소득은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3천억원 초과시 3천억원) × 개별연결법인 기업소득 ÷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⑤1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⑤2란에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지출금액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⑤7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 ⑤5 및 ⑤9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⑤7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 ⑤6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 ⑤8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습니다.
- ⑥1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측정·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2. (생략)

⑦ (생략)

<신설>

----- 시설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에

-----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11(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2. 모든 주요 제작 분야(시나리

오, 콘티, 그림, 편집)에 대하여 제작 인력 본인이거나 제작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3.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② 영 제22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10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12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2.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④ 영 제22조의12제5항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가. 첫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나. 첫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
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신 설>

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 후의 과세연도: 해
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

2. 웹툰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 전체 웹툰콘텐
츠 제작비용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
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60조제14항에서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
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
(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장”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
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거주자군 또는 비거주자군과 관련된 서류

1) (생략)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서류

3)·4) (생략)

<신설>

<신설>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

----.

1. -----
--

가. -----

1) (현행과 같음)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나목·라목의 서류

3)·4) (현행과 같음)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

나. -----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
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
당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
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2) (생략)

<신설>

다. (생략)

2. ~ 4. (생략)

<신설>

1) -----

제56호까지-----
--

2) (현행과 같음)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
3항의 서류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
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
의 범위) 영 제104조의16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증권
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제46조의4 (생략)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
·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 제2호의 계산식에서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 3. (생략)
- 4.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제46조의5 (현행 제46조의4와 같음)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 4.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 또는 제3호 나목-----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
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이 확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
로 표시된 매출액을 국외에서 경영
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
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B: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
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
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
다)

<신 설>

③·④ (생략)

⑤ 영 제104조의21제13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
완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부장
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
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국외에서 경
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B: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
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
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
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5.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
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
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
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
로 표시된 매출액을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1.·2. (생략)

<신설>

3.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4.·5. (생략)

<신설>

제47조의3 ~ 제47조의7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또는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완료 확인서 사본

6.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 목--- 발급한 -----
--

4.·5.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 따른 자본총액 및 부채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자본총액 및 부채액으로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산기준 재무제표상 자본총액 및 부채액으로 한다.

제47조의4 ~ 제47조의8 (현행 제

제47조의8(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제47조의9 (생 략)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 ③ (생 략)
④영 제10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신 설>

<신 설>

47조의3부터 제47조의7까지와 같음)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제47조의10 (현행 제47조의9와 같음)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1.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어민확인서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의7(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

-----.

1. 한국거래소 결제회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의 거래 참가자일 것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⑤ (생략)

제50조의7(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영 제11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text{회전율} = \frac{\text{거래량(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 거래량으로 한정)}}{\text{상장주식 수}}$$

⑦ ~ ⑪ (생략)

⑫ 영 제115조제8항에 따른 양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시장 조성자”라 한다)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호가 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호가제출시점에서 매수호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를 포함한다)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 -----
----- 율의 평균
으로 -----.

$$\text{회전율} = \frac{\text{거래량(당일 한국거래소 정규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 거래량을 합산)}}{\text{상장주식 수}}$$

⑦ ~ ⑪ (현행과 같음)

⑫ -----

----- 의한
시장조성계약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 조성계약
--- “주식시장등조성계약”라
한다)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
(이하 이 조에서 “주식시장등조
성자”라 한다)가 주식시장등조
성계약-----

⑬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10항의 양도 방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내역을 주식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통보해야 한다.

⑭ 주식시장조성자는 영 제115조제10항에 따른 시장조성거래 신고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매 거래일의 시장조성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61조(서식 등)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삭 제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4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

⑬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제12항-----

----- 주식시장등조성자-----

-----.

⑭ 주식시장등조성자-----

-----.

제61조(서식 등) ①-----

-----.

2. -----

6. ~ 7의16. (생략)

<신설>

<신설>

8. ~ 9의13. (생략)

<신설>

<신설>

10. ~ 10의3. (생략)

10의4. 영 제25조제9항, 영 제25조의2제9항, 영 제25조의3제10항 및 영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별지 제9호의5서식

6. ~ 7의16. (현행과 같음)

7의17. 영 제18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비과세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비과세신청서: 별지 제6호의17서식(1) 및 별지 제6호의17서식(2)

7의18. 영 제18조제12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6호의18서식

8. ~ 9의13. (현행과 같음)

9의14. 영 제21조제17항에 따른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3서식

9의15. 영 제22조의12제5항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14서식

10. ~ 10의3. (현행과 같음)

10의4. -----
----- 영 제25조의3제10항, 영 제25조의4제4항 및 영 제25조의5제4항-----

11. ~ 11의7. (생략)
11의8.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
10호의9서식

11의9. ~ 13. (생략)
13의2. 영 제30조제11항, 영 제4
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
7항, 영 제79조의3제8항, 영
제79조의6제6항, 영 제79조의
8제8항, 영 제79조의9제8항,
영 제79조의10제9항, 영 제104
조의16제6항, 영 제116조의35
제10항 및 영 제116조의37제8
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별
지 제12호의2서식

13의3. ~ 13의5. (생략)
1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63조
제10항(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
항, 영 제66조의2제12항, 영
제66조의3제9항, 영 제66조의
4제9항, 영 제67조제9항, 영
제72조제8항, 영 제79조의11

11. ~ 11의7. (현행과 같음)
11의8. -----
----- 별지 제1
0호의9서식(1), 별지 제10호의
9서식(2)

11의9. ~ 13. (현행과 같음)
13의2. -----

----- 영 제104
조의16제10항-----

13의3. ~ 13의5. (현행과 같음)
14. -----

및 영 제97조의9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
(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서
식

15. ~ 25의6. (생략)

<신설>

26. ~ 59의2. (생략)

59의3. 영 제14조제12항, 영 제2
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
항, 영 제80조의3제9항, 영 제
81조제7항 및 제12항, 영 제81
조의4제5항,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
조제8항, 영 제93조의2제9항,
영 제93조의4제15항, 영 제93
조의6제13항, 영 제93조의7제
9항, 영 제93조의8제7항 및 영
제116조의38제12항에 따른 특
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
호의3서식

59의4. ~ 61의5. (생략)

<신설>

-- 영 제97조의10제3항-----

15. ~ 25의6. (현행과 같음)

25의7. 영 제35조의6제4항에 따
른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
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
서: 별지 제23호의6서식

26. ~ 59의2. (현행과 같음)

59의3. -----

-- 영 제93조의8제7항, 영 제9
3조의11제6항 -----

59의4. ~ 61의5. (현행과 같음)

61의6. 영 제82조의5제3항, 영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

61의7. ~ 61의12. 삭 제

61의13. ~ 61의16. (생 략)

61의17. 영 제92조의13제3항, 영 제93조의2제3항, 영 제93조의6제4항 및 영 제93조의7제6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17서식

61의18. 삭 제

61의19. ~ 61의23. (생 략)

61의24. 영 제93조의6제2항제1호, 영 제93조의7제3항제1호 및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4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8서식

61의25. ~ 63의5. (생 략)

<신 설>

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30서식

61의13. ~ 61의16. (현행과 같 음)

61의17. 영 제82조의5제5항, 영 제83조의3제4항, 영 제92조의13제3항-----

61의19. ~ 61의23. (현행과 같 음)

61의24. 영 제93조의6제2항제1호, 영 제93조의7제3항제1호,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 및 영 제93조의11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4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 별지 제60호의28서식 및 제60호의29서식

61의25. ~ 63의5. (현행과 같 음)

63의6. 영 제97조의9제8항에 따 른 현물출자명세서 및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62

64. ~ 64의3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65. ~ 65의13. (생략)

65의14. 영 제104조의16제7항에
따른 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64호의15서식

65의15. ~ 65의20. (생략)

65의21. 영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
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2서식

65의22. 법 제104조의27제4항에

호의6서식 및 제62호의7서식

64. ~ 64의32. (현행과 같음)

64의33. 영 제99조의14제3항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별지 제63호의33서식

64의34. 법 제99조의15제4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 별지 제63
호의34서식(1) 및 별지 제63호
의34서식(2)

64의35. 법 제99조의15제5항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결정 취
소 통지서: 별지 제63호의35서
식

65. ~ 65의13. (현행과 같음)

65의14. 영 제104조의16제11항
에 따른 취득완료보고서: 별지
제64호의15서식(1), 별지 제64
호의15서식(2)

65의15. ~ 65의20. (현행과 같
음)

65의21. 영 제104조의27제5항--

<삭제>

<p><u>따른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u> <u>별지 제64호의23서식</u></p> <p><u>65의23. 법 제104조의27제4항에</u> <u>따른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u> <u>득 원천징수 명세서: 별지 제6</u> <u>4호의24서식</u></p> <p>65의24. ~ 97. (생략)</p> <p>② (생략)</p>	<p><u>65의23. 영 제104조의24제6항에</u> <u>따른 분리과세신청서: 별지 제</u> <u>64호의24서식</u></p> <p>65의24. ~ 9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